

현안분석 2008-

국유재산법 전면개정안 연구
The Review of the Governmental Draft Bill for
“The Government Property Law”

연구자 : 이동식(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Lee, Dong-Sik
김세진(부연구위원)
Kim, Se-Jin

2008. 11. 25.

국문 요약

국유재산법은 1950.4.8. 법률 제122호로 제정되었으며, 1956.11.28 법률 405호로 폐지·제정된 후 1976년 전면개정을 한 후 현재까지는 일부개정만을 해 오고 있었다.

그 사이 우리사회는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였고, 또 관련제도들도 상당히 많이 변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법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새로이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기획재정부 국고국에서 국유재산법 전문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부의 국유재산법 전문개정안에 대해 법리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국유재산법 전문개정안 초안을 기초로 하여 제3장에서는 전문개정안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통해 전문개정안의 체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제4장에서는 개별 조문안별로 이론적인 보충이 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조문을 선정하여 각 조문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추가하고 대안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였다.

※ 키워드 : 국유재산의 구분, 권한의 위임·위탁, 사용료, 사용허가, 타인토지 등의 출입

Abstract

The government property law(GPL) was enacted first time on April. 8, 1950. So far this law was revised several times. The latest fundamental reform of this statute was done in 1976. After that the law was changed only partially. But our society experienced the big changes after 1976. Additionally many of the other relevant statutes were revised recently. Then it is really necessary to amend the GPL basically. That is the reason why the Government recently prepared a draft bill for GPL. The Government laid recently a draft bill for “the government property law (GPL)” before Congress.

The Goal of this report is the review of the draft bill. We examined the bill in its theoretical Correctness and its Suitability for the current Society and the relevant law system.

We are also trying to make an alternative of the government draft bill.

※ **Key Words** : government property, delegation of authority, fee of the rental of a specific government property, permission for the rental of a government property, field survey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연구의 목적	13
제 2 장 정부 법안에 대한 총평	15
1. 정부 법안의 구성	15
2. 정부의 법안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19
1) 기존 국유재산법의 큰 틀의 유지	19
2) 수요자(국민) 중심의 법안 구성 필요성	19
3) 장별 평가	19
4) 법안의 전체적인 재구성	20
제 3 장 개별 장별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27
1. 법안 제1장 □□총칙□□ 부분	7..... 2
1) 일반적인 법률의 “총칙” 부분과의 비교	27
2) 총칙에 포함되는 조문들	28
2. 법안 제2장 □□국유재산의 취득□□ 부분	9..... 2
3. 법안 제3장 □□국유재산의 유지·운용·보존□□ 부분	0..... 3
1) 일 반	30
2) 일반재산에 관한 법률용어의 수정	31
4. 제4장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처분” 부분	32

5. 제5장 “각종 제재방법” 부분	32
6. 제6장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행정” 부분	33
1) 전체적인 설명	33
2) 제6장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2장에 대한 대안제시	34
7. 제7장 “보칙” 부분	43
제 4 장 개별규정에 대한 검토	45
1. 전체 규정의 분류	45
2. 제1조 목적규정의 수정필요성	46
3. 제2조 정의규정의 수정	47
1) 제4호 “총괄청”·제5호 “관리청”	47
2) 제8호 “관리전환”	47
3) 제10호 “사용허가”	47
4) 제11호 “대부계약”	49
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0
1)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법규정의 우선관계	50
2) 참고 입법례	50
3) 법안의 타당성	52
5. 제4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52
1) 조문의 취지	52
2) 현재 정부의 법률안	52
3) 문제점 지적	53
4) 수정제안	53
6.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55

1) 조문의 취지	55
2) 현재 법안	56
3) 수정제안	56
4) 제안이유	57
7.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58
8. 제9조(국유재산관리계획)	59
1)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법안 제9조)	59
2) 국무회의 심의사항인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헌법 제89조 제4호)	60
3) 양자의 관계	60
4) 관리계획의 수립과 개별적 관리·처분행위	62
9.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재원)	64
1) 개정취지	64
2) 현재법안	64
3) 문제점 검토 및 수정제안	65
10. 제11조(사권설정의 제한)	67
1) 조문의 타당성	67
2) 문제점	69
3) 수정제안	70
11.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71
1) 조문의 취지	71
2) 현재법안	71
3) 수정제안	72
4) 제안이유	72
12.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74

1) 문제점	74
2) 수정제안	74
13.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75
1) 조문의 취지	75
2) 조문의 타당성	75
14. 제30조(사용허가)	77
1) 문제점	77
2) 참고 입법례	77
3) 수정제안	78
15. 제32조(사용료)	78
1) 조문의 취지	78
2) 현재법안	79
3) 참고 입법례	80
4) 수정제안	82
5) 수정제안이유	85
16. 제35조(사용허가기간)	87
1) 조문의 취지	87
2) 사용허가기간 “갱신”과 사용허가기간 “연장”	87
3) 조문 문구의 문제점	89
4) 수정제안	89
17. 제41조(처분 등)	90
1) 문제점	90
2) 수정제안	91
18. 제42조(관리처분사무의 위임 및 위탁)	91
1) 제42조 제5항의 취지	91

2) 참고 입법례: 국세징수법 제61조	91
3) 제42조 제5항의 타당성	92
19.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93
1) 문제점	93
2) 수정제안	94
20. 제60조(현물출자)	94
1) 조문의 취지	94
2) 현물출자 요건의 비교	94
3) 문제점 검토	95
4) 수정제안	96
21. 제65조(상법의 적용배제)	97
22. 제67조(타인토지 등의 출입)	98
1) 조문의 취지	98
2) 참고 입법례	99
3) 제67조의 문제점	100
4) 수정제안	104
23.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106
1) 조문의 취지	106
2) 현재법안	106
3) 참고 입법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관련 규정	107
4) 문제점 검토	108
5) 수정제안	109
24. 제75조(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111
1) 조문의 취지	111
2) 현재법안	112

3) 참고입법례: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	112
4) 문제점 지적	113
5) 수정제안	114
25. 제76조(정보공개)	115
1) 조문의 취지	115
2) 현재 법안	115
3) 문제점 지적	115
4) 수정제안	116
26. 부칙 제7조(국유재산관리조직개편준비단의 설치)	116
1) 규정의 취지	116
2) 조문의 타당성	117
 제 5 장 결 론	 119
 참 고 문 헌	 121
 별첨자료 1: 2008. 7. 정부의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유재산법(안)	 125
 별첨자료 2: 표 1에 따른 국유재산법 전면수정안 국유재산법(안)	 159

제 1 장 연구의 목적

국유재산법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그 관리와 처분에 대해 법적 규율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국유재산법에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도로법과 같이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규정하는 특별법이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일반법이 필요하고 그 필요성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이 국유재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은 1950.4.8. 법률 제122호로 제정되었으며, 1956.11.28 법률 405호로 폐지제정된 후 1976년 전면개정을 거쳐 현재까지는 일부 개정만을 해 오고 있었다.

그 사이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고, 관련 제도들도 많이 변화했으므로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법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새로이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에서 최근 국유재산법 전문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부의 국유재산법 전문개정안에 대해 법리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¹⁾

1) 여기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정부의 국유재산법 전문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별첨자료 1에 추가해 둔 2008. 7. 기획재정부 국고국에서 마련한 법률안을 의미한다. 그 후 기획재정부에서 2008. 8. 국유재산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조문의 일부가 수정되기도 하였는데 그 조문안은 이 보고서에 첨부하지는 않았다.

제 2 장 정부 법안에 대한 총평

1. 정부 법안의 구성

정부의 국유재산법 전문개정안은 법률 본문 82개 조문 및 부칙 7개 조문과 시행령 83개 조문, 시행규칙 6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²⁾ 정부의 국유재산법 전문개정안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 있다.

< 정부의 국유재산법 전문개정안의 구성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 제 2 조(정의)
-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 4 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 제 5 조(국유재산의 범위)
- 제 6 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제 7 조(국유재산의 보호)
- 제 8 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 제 9 조(국유재산관리계획)
- 제 10 조(국유재산 취득재원)
- 제 11 조(사권설정의 제한)
- 제 12 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 제 13 조(기부채납)
- 제 14 조(등기·등록 등)
- 제 15 조(증권의 보관·취급)
- 제 16 조(관리전환의 협의 등)
- 제 17 조(서로 다른 회계·기금간의 유산관리전환 등)

2) 정부의 국유재산법 전문개정안은 이 보고서 후단에 별첨자료 1로 첨부하였다.

제 2 장 정부 법안에 대한 총평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9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20조(직원의 행위제한)

제 2 장 총괄청

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제23조(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제24조(관리청의 지정)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회)

제 3 장 행정재산

제27조(처분의 제한)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제29조(관리위탁)

제30조(사용허가)

제31조(사용허가방법)

제32조(사용료)

제33조(사용료의 조정)

제34조(사용료의 면제)

제35조(사용허가기간)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37조(청문)

제38조(원상회복)

제39조(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제40조(용도폐지)

제 4 장 일반재산

제 1 절 통 칙

제41조(처분 등)

- 제42조(관리·처분사무의 위임 및 위탁)
- 제43조(계약의 방법)
-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 제45조(개척·매립·간척·조립을 위한 예약)

제 2 절 대 부

- 제46조(대부기간)
-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제 3 절 매 각

- 제48조(매각)
- 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 제51조(소유권의 이전 등)
- 제52조(매각계약의 해제)
- 제53조(시설물의 매수)

제 4 절 교 환

- 제54조(교환)

제 5 절 양 여

- 제55조(양여)
- 제56조(일괄양여)

제 6 절 개 발

- 제57조(개발)
- 제58조(신탁 개발)
- 제59조(위탁 개발)

제 7 절 현물출자

- 제60조(현물출자)
- 제61조(현물출자 절차)

제 2 장 정부 법안에 대한 총평

제62조(출자가액 산정)

제63조(출자재산의 수정)

제64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제65조(상법의 적용제외)

제 5 장 대장(臺帳)과 보고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제67조(타인토지 등의 출입)

제68조(대장가격 등)

제69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제70조(멸실 등의 보고)

제71조(적용제외)

제 6 장 보 칙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73조(연체료의 징수)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제75조(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제76조(정보공개)

제77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제78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제79조(변상책임)

제80조(청산절차의 특례)

제81조(본점이나 주사무소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 절차)

제 7 장 벌 칙

제82조(벌칙)

부 칙

제 1 조(시행일)

2. 정부의 법안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 제 2 조(다른 법령의 폐지)
- 제 3 조(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 제 4 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 제 5 조(일반재산관리체제개편준비단의 설치)
- 제 6 조(다른 법률의 개정)
- 제 7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 정부의 법안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1) 기존 국유재산법의 큰 틀의 유지

현재 정부의 국유재산법안은 현행 국유재산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개정 필요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수요자(국민) 중심의 법안 구성 필요성

현재의 국유재산법은 많은 부분이 총괄청·관리청만을 수범자로 하는 듯한 형태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국유재산법은 일반 국민에게도 매우 중요한 법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첫째 몇 가지 용어(예컨대, “매각”, “대부”등)는 수정이 필요하고, 또 법안에서 논리성·체계성이 약한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장별 평가

먼저 현행 국유재산법과 정부의 전부개정 법률안은 모두 다른 법률과 달리 제1장 총칙에서 지나치게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들이 제2장이 모여져 있지 않다. 그 일부는 제1장에도 있고, 또 일부는 제3장과 제4장에도 위치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어 각각의 국유재산을 국민 등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분(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과 “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정확히 제3장과 제4장이 국유재산의 관리행정 가운데 어느 부분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 실제 관리행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1장 등 다른 장에도 위치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 외에도 제4장의 경우에는 민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이 유사한 내용들을 규율함에 있어서 민법과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론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제5장에서는 대장과 보고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행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 이것을 별도의 장으로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제6장에서는 “보칙”이라는 장 제목 하에 변상금이나 연체료와 같은 각종 행정제재에 대해 많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정보공개, 은닉재산의 신고 등 행정제재와 내용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함께 하나의 장을 구성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제7장에서는 벌칙이라는 장 제목 하에 하나의 규정만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제6장 규정의 다수를 차지하는 행정제재와 “제재(penalty)”라는 측면에서 내용적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들을 함께 하나의 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4) 법안의 전체적인 재구성

(1) 조문의 재배열

위와 같은 법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기초로 하여 정부의 국유재산법 전부개정안을 논리적·체계적으로 재구성해 본다면 아래와 같

은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국유재산법의 전체적인 장 구성

장의 순서	장에 포함시킬 조문번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5조(상법의 적용제외):현물출자관련, 제80조(청산절차의 특례), 제71조(적용제외), 제4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19조, 제68조(가격평가 등)
제 2 장 국유재산의 취득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재원), 제11조 제1항(사권설정의 제한),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제13조(기부채납), 제14조(등기·등록 등), 제15조(증권의 보관·취급)
제 3 장 국유재산의 유지·이용·보존	제 1 절 행정재산의 경우 제 7 조 제2항(시효취득의 금지)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제11조 제2항 본문 제30조(사용허가) 제31조(사용허가 방법) 제32조(사용료) 제33조(사용료의 조정) 제34조(사용료의 면제) 제35조(사용료의 면제)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37조(청문회) 제38조(원상회복) 제 2 절 일반재산의 경우 제11조 제2항 단서 제45조: 매각부분은 제외 제46조(대부기간)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제 2 장 정부 법안에 대한 총평

장의 순서	장에 포함시킬 조문번호*
	제57조(개발) 제58조(신탁개발) 제59조(위탁개발) 제60조(현물출자) 제61조(현물출자절차) 제62조(출자가액산정) 제63조(출자재산 등의 수정) 제64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제65조(상법의 적용제외)
제 4 장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처분	제 1 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처분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요구 등) 제27조(처분의 제한) 제40조(용도폐지) 제23조(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제 2 절 일반재산의 처분 제41조(처분 등) 제2항 제43조(계약의 방법)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제45조: 매각부분만 분리해서 별도로 다시 언급 제48조(매각) 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제51조(소유권의 이전 등) 제52조(매각계약의 해제) 제53조(시설물의 매수) 제54조(교환) 제55조(양여) 제56조(일괄양여)
제 5 장 각종 제재방법	제39조(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2. 정부의 법안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장의 순서	장에 포함시킬 조문번호*
	제75조(과오납금반환가산금) 제79조(변상책임) 제82조(벌칙)
제 6 장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행정	제 1 절 행정청(총괄청·관리청)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관리전환·총괄청에의 인계를 위한 부분만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행정재산 제29조(관리위탁): 행정재산 제42조(관리처분사무의 위임·위탁: 일반재산) 제 2 절 행정계획 제 9 조(국유재산관리계획) 제 3 절 감사·대장·보고 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제67조(타인토지 등의 출입) 제69조(국유재산관리운영보고서) 제70조(멸실 등의 보고) 제 4 절 직원의 행위제한 제20조
제 7 장 보 칙	제76조(정보공개) 제77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제78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제81조(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 표에서의 조문번호는 현재 정부의 법안에 표시된 조문번호를 의미함.

(2) 재배열한 조문에 대한 총괄적 설명

이와 같은 장 편성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제1장은 다른 법률들의 제1장 “총칙”부분을 참조하여 현재의 규정들 중 논리적·체계적으로 “총칙”부분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부분으로 범위수정을 하였다. 기존 법안의 총칙에 위치하고 있던 많은 규정들을 더 적절한 부분으로 위치조정을 하고 기존 법안에서 다른 장에 위치하고 있던 규정들 중 성격상 “총칙”부분에 위치하기에 더 적합한 규정들은(예, 국유재산법안 제65조, 제71조, 제80조 등) “총칙”으로 위치를 바꾸었다.

국유재산법의 핵심은 제2장에서 제4장 사이에 배치하였다. 제2장에서 제4장까지는 i) 어떻게 국유재산이 될 수 있는지(제2장), ii) 국유재산이 된 재산은 어떻게 유지·운용·보존해야 하는지(제3장) 그리고 iii) 국유재산이 된 재산은 어떻게 용도폐지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제4장)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대부분 기존 법안의 제3장과 제4장에 위치하고 있던 규정들이지만 그 외에도 기존 법안의 제1장 등 다른 장에 있던 규정들 중 일부도 내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재배치를 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유재산법영역에 존재하는 각종 변상금, 가산금 등 각종 제재규정들을 모아 두었다. 기존 국유재산법안에서 제7장으로 구분되어 규정되고 있었던 제82조 벌칙부분도 그 내용이 “제재(penalty)”에 관한 것이므로 제5장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6장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행정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유재산에 대해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권한배분이 어떻게 되며, 행정기관들이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진행시켜야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은 다시 제1절에서 총괄청·관리청에 대해 규정을 하도록 하

2. 정부의 법안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고, 제2절에서는 국유재산에 관한 행정계획에 대해. 제3절에서는 대장과 보고에 대해 규정을 하며, 마지막 제4절에서는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20조에 규정된 “직원의 행위제한”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제7장은 보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 3 장 개별 장별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1. 법안 제1장 □□총칙□□ 부분

1) 일반적인 법률의 “총칙” 부분과의 비교

일반적으로 법률의 총칙부분에서는 해당 법의 목적, 해당 법상의 중요한 개념들의 정의, 그리고 그 법의 적용원칙 등을 간략하게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법률의 총칙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의 예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담배사업법
제 1 조 목 적	제 1 조 목 적	제 1 조 목 적	제 1 조 목 적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정 의	제 2 조 정 의	제 2 조 정 의	제 2 조 정 의	제 2 조 정 의
	제 3 조 식품 등의 취급	제 3 조 적용범위	제 3 조 군수 품 관 리 에 관한 특례	제 3 조 적용 범위
		제 4 조 국고금 관리의 원칙	제 4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4 조의 2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제 4 조의 3 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이러한 예시 입법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현재 법안의 총칙부분은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측면이 있다. 위 입법례 등을 참조하였을 때 법률의 총칙부분에는 법의 목적, 법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들의 정의, 법률의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리고 법을 운영하는 큰 원칙에 관한 규정들이 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유재산법안의 총칙부분을 재조정한다면 총칙부분에는 위 표 1에서 언급한 조문들만을 위치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총칙에 포함되는 조문들

표 1에 따를 때 총칙에 포함되게 되는 조문들을 기존 법안의 총칙에 있던 규정들과 다른 장에 있던 규정들로 분류를 해 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총칙에 규정되는 조문의 분석

기존 법안의 “총칙”부분에 있던 조문	새로이 “총칙”장에 포함된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19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65조(상법의 적용제외):현물출자관련, 제80조(청산절차의 특례), 제71조(적용제외), 제68조(가격평가 등)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65조와 제80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조문이므로 위치를 제1장 “총칙”부분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경우에는 현재처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정부 법률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일부 규정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법안 제2장 □□국유재산의 취득□□ 부분

정부의 법률안 제71조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특정 국유재산과 그 밖에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산은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 법조문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이므로 제1장 “총칙”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법률안 제68조는 제5장 “대장과 보고”의 장에 위치하는 조문으로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그 성격상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 성격상 “총칙”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법안 제2장 □□국유재산의 취득□□ 부분

국유재산법을 논리적·체계적으로 구성한다면 “총칙”에 관한 장 다음으로는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이 아닌 재산이 국유재산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위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제2장은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규정들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하는 식으로 할 것을 제안해 본다.

현재 정부의 법률안에 있는 조문 중 “국유재산의 취득”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조문들은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자원), 제11조 제1항(사권 설정의 제한),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제13조(기부채납), 제14조(등기·등록 등), 제15조(증권의 보관·취급)이다.

이 조문들은 현재에는 “총칙”부분에 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3. 법안 제3장 □□국유재산의 유지·운용·보존□□ 부분

1) 일 반

제3장은 제2장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어떻게 국유재산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필요하고 허용되는 경우에는 국민들의 사적인 사용에 제공을 하고(운용) 그리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규정들을 종합한 것이다.

제3장은 다시 제1절 “행정재산의 경우”와 제2절 “일반재산의 경우”로 나누어 조문정리를 하였다.

제3장에 위치한 조문들은 대부분이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3장 “행정재산”부분과 제4장 “일반재산”부분에 위치한 것들이다. 하지만 일부 조문들의 경우에는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1장 총칙에 포함된 조문들도 있다. 예컨대, 정부의 법률안 제1장에 위치하고 있는 제7조 제2항의 시효취득금지에 관한 규정은 국유재산으로 국가가 취득하여 행정재산으로 분류해 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금지된다는 조문이므로 제3장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1조 제2항이나 국가 외의 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제18조도 마찬가지로 현재에는 “총칙”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법률안을 전체적으로 재편성한다면 제3장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중복되는 조문이 있는 경우에는(예: 제18조) 일단 제1절에서 행정재산에 관한 조문으로 배치를 하고 제2절 일반재산에 관한 부분에서 해당 조문을 일반재산의 유지·운용·보존에도 “준용”하도록 하는 입법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2) 일반재산에 관한 법률용어의 수정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4장에 있는 일반재산에 관한 국유재산법 조문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국유재산법조문이 특별법에 해당한다면 국유재산을 둘러싼 임대·매매 등의 거래행위 개념 자체는 가능한 한 민법의 전문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국유재산법은 임대·매매 등에 대해 민법에 대한 특별 규정만을 두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유재산법과 그 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법안에서는 “대부” “매각” 등 민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행위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는 “임대”로 “매각”은 “매매”로 용어사용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부”나 “매각”과 같은 개념들이 국유재산관리·처분행정에 있어서 지난 50여 년간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전문가들이나 행정공무원에게는 그러한 용어들이 익숙하겠지만 일반 국민들과 같이 법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혼란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국유재산법 전면개정을 국민들에게 친숙한 국유재산법을 만들기 위한 전환기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용어를 민법의 용어에 가능한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매각”처럼 국유재산법의 수범자를 마치 행정기관에 한정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용어들은 이 법이 국민들의 법률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으로 좀 더 국민중심으로 법조문을 표현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매각”이 아닌 “매매”로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교환은 매매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것이다. 교환에 대해서는 1개의 조문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와 별도의 장을 구성하고 있는데 매매와 교환을 하나의 절에서 언급하는 것이 법체계의 단순화를

위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4. 제4장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처분” 부분

제4장은 제3장에서 규정하는 대로 국유재산을 유지·이용·보존하다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한다든지, 처분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용도폐지·처분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의 경우에도 제1절 “행정재산”부분과 제2절 “일반재산”부분으로 나누어 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4장 제1절 “행정재산”부분에서는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27조에 규정된 “처분의 제한” 부분과 제40조에 규정된 “용도폐지”부분을 함께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제2절에서는 주로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4장 제1절 “통칙”부분에 있는 규정들을 이동시킨 것이다.

5. 제5장 “각종 제재방법” 부분

제5장에서는 국유재산의 유지·이용·보존과정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국민들에 의해 야기된 불법적 행위에 대해 가해지는 각종 제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장에는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3장에 있는 제39조(관리소홀에 대한 제재)와 제6장 보칙에 있는 규정 중 제72조에서 제75조까지와 제79조(변상책임)를 이동시키고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7장 “벌칙”부분에서 제82조 한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사제재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6. 제6장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행정” 부분

1) 전체적인 설명

이 부분은 국유재산 전반에 관한 행정 중 권한배분과 같은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규율하는 부분이다.

이 장의 제1절은 “행정청” 내지는 “총괄청·관리청”이라는 제목 하에 주로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2장 “총괄청”부분에 있는 규정들을 이동시키고, 그 외에 현재 제1장 “총칙”에 있는 규정 중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와 제16조(관리전환의 협의 등) 그리고 제17조(서로 다른 회계·기금 간의 유상관리전환 등)”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그 외에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3장 “행정재산”부분에 위치하고 있던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제29조(관리위탁)와 제4장 “일반재산”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제42조(관리처분사무의 위임·위탁:일반재산)도 성격상 함께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행정계획”부분에서는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9조(국유재산관리계획)에서 규정한 부분을 그대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제3절 “대장과 보고”에서는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5장 “대장과 보고” 중 성격상 함께 규정하는 것 보다는 다른 장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68조(가격평가 등)와 제71조(적용제외)를 제외한 부분을 규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제4절 “직원의 행위제한”에서는 현재 제1장 “총칙”부분에 규정된 제20조 규정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2) 제6장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2장에 대한 대안제시

(1) 문제점

일단 현재의 제2장은 “총괄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규정내용에서는 총괄청이 어느 기관을 의미하는 지는 제2조(정의)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또한 규정내용들이 “총괄청이 무엇을 하여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관리청이 무엇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³⁾

국민들로서는 제2장의 규정들을 통하여 i)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어느 곳이며, ii) 그 기관들이 어떤 활동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개선안

가) 제2조 정의규정의 수정

제2조 제4호, 제5호에 규정된 총괄청, 관리청에 대한 정의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2조 제4호는 총괄청을 “정의”하면서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의규정이라기 보다는 어느 기관이 총괄청이 되는지를 규정한 조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청에 관한 제2조 제5호의 경우에도 유사한 실정이다.

논리적으로는 우선 제2조 제4호, 제5호에서 총괄청과 관리청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를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그리고 총괄청, 관리청에 대해 규정하는 장의 다른 조문에서는 그러한 일을 하는 총괄청, 관리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기관이 되는지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3) 법안 제21조 제2항.

이러한 취지에 따라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2조 제4호, 제5호를 수정한다면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총괄청·관리청에 대한 정의규정의 수정안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 이유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 .</p> <p>4.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말한다.</p> <p>5. “관리청”이란 『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p> <p>. . . .</p>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 .</p> <p>4. “총괄청”이라 함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총괄하며, 관리청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p> <p>5. “관리청”이라 함은 총괄청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p> <p>. . . .</p>	<p>제2조는 단순히 “개념정의”로 그치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기관이 어느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조문에서 명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편리함.</p>

나) 제21조 신설 제안

제2조 제4호, 제5호를 위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순수한 정의규정으로 수정한다면 제2장에서는 어느 기관이 총괄청이 되고 어느 기관이 관리청이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의 법률안에 따르면 제1장 총칙부분 중 제2조 제4호와 제5호에서 총괄청, 관리청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다시 제1장 총칙부분 중 제8조에서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라는 규정을 두어 총괄청과 관리청의 관리사무의 범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제3장 “행정재산”부분과 제4장 “일반재산”에 관한 조문에서 관

리청에 관한 별도의 추가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제3장 “행정재산”에 관한 규정 중 제28조·제29조에서 관리업무의 “위임·위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제4장 “일반재산”에 관한 규정 중 제42조에서 관리·처분사무의 위임·위탁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관리청이 어느 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1장 총칙부분에서 규정을 하고 관리청이 그 관리권한을 위임·위탁하여 관리기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제2장 “총괄청”에 관한 규정 중 제24조에서는 관리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관리청 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의 관리를 어느 기관이 담당하게 되는지가 제1장 총칙부분과 제2장 총괄청부분, 제3장 행정재산부분과 제4장 일반재산부분에 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이러한 상황은 오랫동안 이 법을 다루어 왔던 전문 공무원들이나 법률이론가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법의 논리성·체계성에 문제가 있고 결과적으로 국유재산법을 대하는 일반 국민들을 규정의 혼돈 속에서 헤매게 하여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정신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케 한다.

현재의 법률안을 법치주의 정신에 충실하게 하고 좀 더 일반국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법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련 규정을 하나의 장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행정이 어느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는 하나의 장에 있는 규정들만 읽어 보면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현재 정부의 법률안 편재에 따를 때 제2장에 제21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할 필요가 있다.

〈표 5〉 제21조 신설안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이유
<p>제 1 장 총 칙</p>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 .</p> <p>4. . . .</p> <p>5. . . .</p> <p>제 8 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p> <p>. . . .</p> <p>제 2 장 총괄청</p> <p>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p> <p>① 총괄청은 관리청등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 관리청은 소관 행정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1월 말일까지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총괄청은 관리청등의 재산의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監査)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24조(관리청의 지정) 총괄청은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p>	<p>제 1 장 총 칙</p>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 위 표 4 참고.</p> <p>제 8 조: 삭제</p> <p>제 2 장 총괄청·관리청</p> <p>제21조(총괄청·관리청)</p> <p>① <u>국유재산의 총괄청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u></p> <p>② <u>행정재산의 관리청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u></p> <p>③ <u>일반재산의 관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의 관리청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된다.</u></p> <p>1. 『국가재정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에 속하는 재산</p> <p>. . . .</p> <p>④ <u>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청이 그 재산의 관리청을 지정한다.</u></p>	<p>가. 제21조 신설</p> <p>나. 현재안의 제21조는 제22조로 조문번호수정</p> <p>다. 현재안의 제8조, 제24조는 삭제</p> <p>라. 개별항목별 수정이유</p> <p>① “총괄청”과 “관리청”이라는 개념정의 규정과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총괄청이 되고 관리청이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양자를 구별함.</p> <p>② “총괄청”이라는 장에서 국유재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어느 기관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줌. 국유재산의 종류에 따른 총괄청·관리청의 역할과 구분을 분명하게 해줌.</p> <p>③ 수정안 제21조 제2항에 대한 설명: 현재 법안 제2조 제5호를 이해하려면 3개의 법률조문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일차적으로 국유재산법의 해당조문을 보고, 다시 국가재정법 제6조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헌법 등 다른 법률을 검토해야 함. 가능한 한 법률은 해당 법률규정만</p>

제 3 장 개별 장별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이유
<p>관리청을 지정한다.</p> <p>제 4 장 일반재산</p> <p>제 1 절 통 칙</p> <p><u>제42조</u>(관리·처분사무의 위임)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관리청 또는 그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u>제22조</u>(총괄청의 감사 등) · · ·</p> <p><u>제24조</u>: 삭제</p>	<p>으로 완전하게 이해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내용의 상당부분을 다시 다른 법률에서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준용”하는 형태의 입법을 취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미로 찾기”식의 2중 3중의 수고를 요구하고 있음.</p> <p>④ 수정안 제21조 제3항에 대한 설명: 현재 법안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분을 일부 수정함. 관리청이 “원칙적인” 관리·처분기관임을 전제할 때 “일반재산”의 경우 관리청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먼저 명시하고, 그 다음으로 예외적으로 총괄청이 담당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해야 관리청·총괄청 개념정의에 부합하고 논리적임.</p> <p>⑤ 수정안 제21조 제4항에 대한 설명: 현재 법안 제24조를 국민들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일부 표현을 수정함.</p>

다) 제25조를 제22조로 전환

현재 정부의 법률안에서는 제25조에서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법 제21조를 신설하여 “총괄청·관리청”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기능하게 한다면 현재 정부의 법률안에서 총괄사무의 위임·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25조는 제22조로 조문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되면 원래의 총괄청 관리청에 대해서는 제21조에서 규정을 하고, 총괄업무의 위임·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22조에서 규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수정 법률안을 제시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6> 제25조를 제22조로 수정하는 안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 이유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총괄청·관리청):신설 제22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가. 조문번호수정 나. 수정이유 원칙적인 총괄청에 관한 규정(제21조)과 총괄사무의 위임·위탁 규정을 연결해서 위치시킴으로 인해 국민들로 하여금 총괄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

라)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제28조 제29조를 제23조로 전환

표 5에서와 같이 제21조를 신설하여 관리청 일반에 대해 규정을 하고, 표 6에서와 같이 제22조에서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해 규정을 한다면,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3장 중 제28조와 제29조는 제23조로 조문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현행 법안 제28조 제29조의 내용 중 법령에 별도로 규정을 두는 것이 불필요하면서 국민들에게 법령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문들은 시행령으로 위치이동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7> 현행 제28조·제29조를 제23조로 수정하는 안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 이유
<p>제 3 장 행정재산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 · · ·</p> <p>제29조(관리위탁) ① 관리청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 · ·</p>	<p><u>제 2 장 총괄청</u> <u>제21조(총괄청·관리청): 신설</u> <u>제22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조문위치 이동</u> <u>제23조(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위탁)</u> ① <u>행정재산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의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u> - 참고: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② <u>행정재산의 관리청은 행정재산의 효율적</u>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p>	<p>가. 현재안의 제28조, 제29조는 삭제하는 대신 제23조를 신설. 나. 제안이유: ①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은 국유재산법과 같은 개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정부조직법 제6조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안에서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유재산법에의 접근을 쉽게 한다는 국유재산법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② 현재 법안 제28조 제2항과 같은 내</p>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 이유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은 굳이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되는 사항이므로 시행령으로 위치를 바꾸는 것이 법률의 단순화에 도움이 됨.

마) 일반재산 관리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제42조를 제24조로 전환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사무의 위임·위탁에 대해 제3장 제28조와 제29조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4장 제42조에서는 일반재산 관리사무의 위임·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제4장보다는 현재 법률안 편재에 따를 때 제2장으로 위치를 이동시켜 제24조로 전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제21조를 신설하여 총괄청·관리청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기능하게 하고, 제22조에서는 총괄사무의 위임·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각각 행정재산·일반재산 관리사무의 위임·위탁에 대해 규정하게 하는 방안이 되어 진다.

바) 관리전환에 대한 규정인 제16조 제17조를 제25조 제26조로 전환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16조는 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을 받거나 반대로 자기 소관의 국유재산관리를 다른 기관에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17조는 서로 다른 회계·기금간에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두 규정은 모두 “관리전환”에 관한 규정으로 그 내용상 제1장 총칙보다는 국유재산의 관리행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장인 현재의 제2장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 제2장의 위치를 제6장 제1절로 전환

위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의 전체적인 편장을 새로 한다면 현재 위에서 검토한 제2장의 내용은 제6장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행정”의 제1절 “행정청(총괄청·관리청)”부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법률에 있어서 장의 순서는 그 법률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요도 순서에 따르는 것이 순리이다. 예컨대, 헌법의 경우에도 제1장 “총강”에 이어 제2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장 이하에서는 헌법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관들 중에도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가 가장 중요하므로 제3장이 “국회”에 관한 장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유재산법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유재산이 아닌 재산이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이 되며, 국유재산이 된 재산은 어떤 유지·운동·보존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한번 국유재산이 된 재산은 어떤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용도폐지되거나 처분이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 국민들의 불법적인 행동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로는 어떤 것이 있는 지 등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국유재산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서 편장을 다음과 같이 새로이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1장은 다른 법률의 총칙부분을 참조하여 최소한의 규정으로 하고, 제2장은 국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규정을 하고, 제3장은 국유재산의 유지·이용·보존에 대해 규정을 하고, 제4장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처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제5장은 각종 제재방법에 대해 규정을 하며 제6장에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행정”이라는 장 제목 아래에 제1절에서 행정청(총괄청·관리청)에 대한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7. 제7장 “보칙” 부분

제7장은 국유재산에 관한 법규정 중 위 장 어디에도 포함시키기가 부적절하고 그렇다고 별도의 장으로 편성하기에는 규범적 중요성이 약한 조문들을 모아서 구성하였다. 현재 정부의 법률안 “보칙”부분 중 “제재”부분을 별도의 장으로 묶어내어 분리시켰기 때문에 보칙의 조문이 상당히 축소되고 동질적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81조는 제80조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제80조는 그 성격을 존중하여 제1장으로 편장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제81조는 성격상 제1장으로 갈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해당 조문의 내용이 상당히 많고 그 내용 중 제2항 이하 부분의 경우에는 성격상 제1장에 포함시키기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보칙부분에 남길 것을 제안하였다. 그 적용빈도가 많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장 총칙부분에서 복잡하게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이라는 측면도 고려하였다.

제 4 장 개별규정에 대한 검토

1. 전체 규정의 분류

현재 법률안 상의 조문들을 그 개정취지에 따라 분류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 있다.

〈표 8〉 전체 조문의 성격에 따른 분류

구 분	조문표현수정	신 설	내용보완	내용신설	내용삭제
내용	조 문 표 현 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함	새로운 조문의 신설	기존 조문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승계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	기존 조문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승계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	기존 조문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승계하면서 일부 내용을 삭제
조문 번호	제1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5조, 제69조, 제70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2조, 제4조, 제10조, 제22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50조, 제56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75조	제3조, 제6조, 제9조, 제15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2조, 제45조, 제54조, 제57조, 제58조, 제6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5조, 제18조, 제21조, 제38조,	제53조,

구 분	조문표현수정	신 설	내용보완	내용신설	내용삭제
-----	--------	-----	------	------	------

숫자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은 조문표현을 순화시킨 것이고, 그 다음이 조문신설과 내용보완에 관한 조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완전히 신설된 조문과 내용이 보완된 조문 그리고 기존 조문내용을 원칙적으로 승계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신설한 조문을 합친 숫자가 조문표현을 순화시킨 조문숫자보다도 더 많은 것은 이번 법개정안이 실질적인 전면 개정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개별조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기로 한다. 아래에서의 조문 번호는 현재 정부의 법률안에 표시된 조문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2. 제1조 목적규정의 수정필요성

법안 제1조는 국유재산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표현함에 있어서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국유 재산을 보호하고 그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표현에 따르면 국유재산법의 규율대상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인지가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다. 또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져 있는 측면이 있다.

문장을 목적을 우선하고 순서를 뒤로하며, 또 좀 더 완결된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9〉 제1조 조문표현 수정제안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 이유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	법률이 규정하고자 하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 이유
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관리와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한다.</u>	는 사항을 좀 더 명백하게 표현함.

3. 제2조 정의규정의 수정

1) 제4호 “총괄청” · 제5호 “관리청”

제4호 총괄청에 대한 정의규정과 제5호 관리청에 대한 정의규정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2) 제8호 “관리전환”

제8호는 관리전환을 개념정의하면서 “관리전환이란 . . .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이관(移管)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관리권을 이관한다는 것은 의미의 중복이 있고, 또 개정안의 여러 조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조문표현의 순화와도 조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표현을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전체적인 법의 개정취지와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3) 제10호 “사용허가”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2조 제10호는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기간 동안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이 있다. 첫째, 사용허가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유사한 조문을 두고 있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와 도로법 제40조는 모두 행정처분의 주체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둘째,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 . .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에서는 “관리청은 . . .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을 종합해서 검토하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사용료를 전제로 하는 “유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그 사용료가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을 뿐이지 사용허가를 행정청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된다. 그런데도 현재의 법안 제2조 제10호에서의 사용허가정의에서는 마치 “유상”과 “무상”이 대등한 지위에서 선택가능한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 셋째, 제2조 제10호는 “사용허가”를 정의하면서 “. . .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 . .”이라고 하여 사용과 별도로 수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30조에서는 “사용허가”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반영하여 수정제안을 한다면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제안은 사용허가에 대한 개념정의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방안이다. 공유수면관리법과 도로법에도 유사하게 “사용허가” 또는 “점용허가”라는 행정처분이 있지만 동법상의 정의규정에서 이에 대해 별도로 정의를 하지는 않고 있다. 건축법의 경우에도 “건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인 “건축허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둘째, 만약 정의규정을 현재처럼 제2조에 둔다면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보고서에서는 불필요한 법규정을 삭제하여 법을 단순화시키고 이를 통

해 국민들의 법규정에 대한 접근을 수월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제안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 10〉 제2조 제10호 “사용허가”정의규정의 수정제안

현 재 안	수정제안 1	수정제안 2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기간 동안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전면 삭제 - 참고, 건축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의 정의규정.	<u>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의 관리청이 소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용·수익(이하 이 법에서 “사용”이라 함)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u>

4) 제11호 “대부계약”

제10호와 유사한 문제점이 제11호상의 “대부계약”에 대한 정의규정에서도 등장한다.

〈표 11〉 제2조 제11호 “대부계약” 정의규정의 수정제안

현 재 안	수정제안 1	수정제안 2
<p>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외의 자가 일정기간 동안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p>	<p>전면 삭제</p>	<p><u>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의 관리청이 소관 일반재산을 국가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u></p>

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법규정의 우선관계

현재 정부의 법률개정안 제3조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규정이 국유재산법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유재산법이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보충법” 내지는 “외연법(Mantelgesetz)”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 제3조 단서는 현재 국유재산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국유재산법규정의 보충적 적용과 달리 제2장의 규정은 국유재산법이 아닌 다른 국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법률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2) 참고 입법례

행정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흔히 그 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그러한 경우에 일반행정법과 개별행정법의 관계를 규율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 일반법규정을 모두 개별법규정에 우선하는 방식이 있다. 예컨대, 사회보장기본법 제4조는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방식을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첫 번째 방식의 반대로 개별법규정을 모두 일반법규정에 우선하는 방식도 있다. 예컨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6조는 “문화산업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 방식을 취한 입법례로 볼 수 있다. 셋째, 위 두 방식의 중립적 위치에서 일반행정법에 있는 일부 규정은 개별행정법보다 우선하고, 나머지는 개별행정법이 일반행정법규정에 우선하도록 규정하는 방식도 있다. 다만, 이 방식을 표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일반행정법을 개별행정법보다 우선하는 방식이 있고, 그 반대의 방식이 있다. 정부의 국유재산법 개정안 제3조는 후자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자방식을 취하는지 아니면 후자방식을 취하는지에 따라 결론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자가 일반행정법과 개별행정법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이 반영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과의 관계는 국유재산법 개정안 제3조와 같이 셋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국유재산법안 제3조와 다르게 전자의 방식, 즉 일반행정법규정이 원칙적으로 개별행정법규정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12〉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제 3 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제2절 제45조의 2·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제6장 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세기본법과 국유재산법의 접근방식은 약간 다르지만 결국 일반행정법에 있는 개별규정 중 일부 규정은 개별행정법보다 우선하고 다른 일부는 우선하지 않게 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측면을 가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동일한 효력선상에 있는 “법률규정”간에 어떤 우선순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의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입법재량에 결정적 오류가 있지 않는 한 존중되어지게 된다.

3) 법안의 타당성

현재 정부의 법개정안 제3조는 제2장에 규정된 국유재산법조문들은 다른 개별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처분규정보다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입법자의 재량행사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재량행사에 결정적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타당한 내용의 입법으로서 존중되게 된다.

5. 제4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1) 조문의 취지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이 명시되

어 있지 아니한데, 정부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재산법이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일반법임을 고려하여 그 법에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이 되는 철학과 원칙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2) 현재 정부의 법률안

현재 정부의 국유재산법 개정안 제4조에서 이러한 국유재산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취득과 처분은 균형을 이룰 것
2.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3) 문제점 지적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4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제4조는 주체가 “국가”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국유재산관리·처분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가 아니고 총괄청·관리청이 될 것이므로 조문의 수범자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세에 가장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이 되어야 한다는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정부의 국유재산법안 제4조는 주로 국유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원칙으로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국유재산의 처분이 특정 개인이 아닌 국고에 가장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유재산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여 확보한 재산이다. 따라서 그 국유재산이 더 이상 국유재산으로 유지할 필요

가 없어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이 국가 전체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즉 국고에 가장 큰 수입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을 법안에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4) 수정제안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유재산법안 제4조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해 보면 아래 표 13과 같다.

첫 번째로 국유재산관리·처분의 원칙이 실제로 국유재산관리·처분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원칙이 되도록 그 주체를 분명하게 하였다. 둘째로, 국유재산의 처분은 국고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국유재산관리·처분원칙으로 추가하였다. 이는 입법적으로는 독일연방예산회계법(Bundeshauhaltsordnung) 제75조 제1항을 직접적으로 참조한 것이다. 그 외에도 이 규정은 우리의 국가재정법 제16조에서 “예산의 원칙”으로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 . .”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과도 이념적으로 조화가 된다고 보며, 또한 국가재정법 제63조 제1항은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자산관리주체가 수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국고에 가장 유리하게 자산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과는 조화가 된다고 할 것이다.

〈표 13〉 국유재산법안 제4조 수정안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 이유
<p>제 4 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p> <p>1. 취득과 처분은 균형을 이룰 것</p> <p>2.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p> <p>3.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p>	<p>제 4 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u>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u></p> <p>1. 취득과 처분은 균형을 이룰 것</p> <p>2.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p> <p>3.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p> <p>4. <u>국유재산의 처분은 국고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할 것.</u></p>	<p>가. 수범자의 명확화 나. 국유재산처분시 국가이익극대화원칙을 천명</p>

6.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1) 조문의 취지

현재 국유재산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3 분류하고 있는데 개정법안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2 분류하고 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의 “잡종재산”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다.⁴⁾ 또한 행정재산 중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4) 박헌주 외, “공공부문 보유부동산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999, 80면, 192면. ; 류지태, “현행 국유재산관리의 법적문제”, 『고려법학』 제36권, 고려대학교

외에, 앞으로 일정기간 내에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 행정재산으로 포함됨을 법률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2) 현재 법안

현재 정부의 국유재산법안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3) 수정제안

법학연구원, 2001, 74면 : “국유재산법의 내용을 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거의 같이 취급하고 있으므로(제3장 이하 참조), 사실 실무에서 두 유형을 특별히 구별할 실익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잡종재산은 직접적인 행정목적에 제공되는 행정재산과 달리 엄격한 법적 구속을 받지 않고 탄력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산에 불과하므로, 행정재산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보존재산을 행정재산과 구별되는 유형으로 둘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켜서 파악하여도 무방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문화재재산을 별도의 유형으로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또한 잡종재산은 그 용어는 여하히 사용하는 현재와 같이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 6 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과 그 밖에 국가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4) 제안이유

첫째, 정부의 개정안에 따를 때 시행령에 규정된 기간(5년 이내)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였다. 국유재산법 시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5년 이내라는 기간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면 이제는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보존용재산의 개념정의를 현재 정부의 국유재산법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수정하였다. 법률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을 굳이 시행령에 규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법률만으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도록 할 이유가 없다.

〈표 14〉 국유재산법안 제6조 수정안

제 4 장 개별규정에 대한 검토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 이유
<p>제 6 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p> <p>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p>제 6 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p> <p>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u>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u>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u>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u>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u>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u> 4. 보존용재산: <u>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과 그 밖에 국가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u> 	<p>가. 시행령에 규정된 5년 기간을 법의 단순화를 위해 법률에 규정</p> <p>나. 시행령에 규정된 보존용재산의 개념정의를 참고하여 보존용재산의 개념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함.</p>

7.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다른 법률에 비해 현재 정부의 국유재산법안 제1장 “총칙”부분이 지나치게 규정이 많은 실정이다. 그 중 총칙에 두기가 부적절한 규정을 법률안의 다른 장으로 이동을 시키고자 할 때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도 일부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를 하고 현재 정부의 국유재산법안 제3장 “행정재산”부분이나 표 1에서 수정제안한 국유재산법안 제3장 “국유재산의 유지·운용·보존”부분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제7조 제1항은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7조 제1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표 15〉 국유재산법안 제7조 수정안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 이유
<p>제 7 조(국유재산의 보호)</p> <p>①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p> <p>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p>	<p>제 7 조 제1항: 삭제</p> <p>제 7 조 제2항: 제3장으로 이동</p>	<p>가. 제1항의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불필요한 규정임.</p> <p>나. 제2항은 성격상 “총칙”부분 보다는 현재안의 제3장 “행정재산” 또는 수정제안한 법안 제3장의 “국유재산의 유지·운용·보존”에 관한 장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p>

8. 제9조(국유재산관리계획)

1)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법안 제9조)

정부의 국유재산법틀안 제9조는 현재의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계승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기초하여 국유재산관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총괄청이 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6월 30일까지 관리청에 통보를 하고, 관리청은 이에 기초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총괄청은 이렇게 하여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2월말까지 관리청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국무회의 심의사항인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헌법 제89조 제4호)

헌법은 제89조에서 국무회의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는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필수적인 국무회의 심의사항 중 제4호에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때 국유재산처분계획이라 함은 앞의 “예산안·결산”항목 등과 연계를 해 볼 때 좁은 의미로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계획, 즉 국가의 재산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 양자의 관계

정부의 국유재산법률안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국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게 된다.

1.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 방향
2.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적인 사항
3.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관리·처분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명세
5. 그 밖에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에 따르면 결국 국유재산관리계획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부분과 “처분”에 관한 부분이 함께 포함되게 된다. 이 중 국유재산“관리”부분의 경우에는 헌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의무적인 국무

회의심의사항이 아니고 국유재산“처분”부분만이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국유재산관리계획 중 처분부분만을 분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별도의 국유재산“처분”계획이 없다면 국유재산처분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국유재산관리계획”을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대상으로 하는 것도 법운용상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다만, 국유재산“처분”에 관한 계획의 경우에도 모든 국유재산처분계획이 국무회의의 필요적 심의사항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헌법 제89조 제4호는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범주까지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유재산처분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헌법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입법기관과 법집행기관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2008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제3조 제1항 단서처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관리계획의 변경을 인정하는 것을 행정청이 행정내부규정으로 정하더라도 이것이 직접 헌법규정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현재의 국유재산법 제12조 제2항, 이를 수정한 현재 정부의 국유재산법안 제9조 제3항처럼 관리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해 둔 “법률규정”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현재 국유재산법 제12조 제2항 단서는 “2008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제3조가 규정하는 “관리계획의 변경”도 동일하게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규정과 현재의 관리·처분기준 제3조가 조화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법률개정안 제9조 제5항은 현재 국유재산법 제12조 제2항 단서와 다르게 “관리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에서 적절하게 현재의 관리·처분기준 제3조에 대한 위임규정을 둔다면 현재의 관리·처분기준 제3조는

국유재산법률규정과도 조화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관리계획의 “수립”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수립된 관리계획의 지나친 “변경”은 새로운 수립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되도록 법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관리계획의 수립과 개별적 관리·처분행위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개별적인 국유재산 관리·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두고 그것과 전혀 별개로 개별적인 관리·처분행위를 한다면 관리계획의 수립 자체가 무의미해 질 것이다. 가장 훌륭한 계획은 계획수립 후 정확하게 계획한 대로 실제로 실천이 되어진 계획이라고 할 것이다.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두고 그 계획과 “배치되는” 관리·처분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된다. 만일 처분성이 인정된다면 그 계획으로부터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여 그 계획은 국민과 행정청 모두를 구속하게 된다. 그런데 국유재산관리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일반적·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그야말로 “계획(Planning)”에 불과하다.⁵⁾ 물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판례는 이 계획의 경우에는 “도시

5)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2008, 254면,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8, 186면, 박균성,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2005, 196면, 이광윤,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6, 208면, 석종현, 일반행정법(上), 삼영사, 2005, 367면, 강현호, 행정법총론, 박영사, 2007, 257면,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07, 319면,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08, 334면,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6, 285면,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07, 320면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판결.

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바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 . .”라고 하여 해당 계획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⁶⁾ 국유재산관리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허가와 같은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개입할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개별적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이에 반하는 국유재산관리·처분행위는 위법한 처분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한 행정계획으로서 그에 “배치되는” 국유재산관리·처분행위라고 해서 그것이 그 이유만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모든 국유재산관리·처분행위는 그 계획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도 문제된다. 법치행정원리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가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범위까지의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과 같은 학설대립이 있다. 행정계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100% 완벽한 행정계획이라는 것을 가정할 수 없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계획에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계획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계획을 수립해둔 상황 하에서는 가능한 한 행정청은 그 행정계획에 따라 개별적 행정작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작용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 국유재산관리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의 수립이

6)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판결.

그러한 행정작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9.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재원)

1) 개정취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폐지로 국유재산 수입이 일반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수입이 정상적 지출 충당에 우선 사용되고 국유지 비축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유지 비축을 위한 회계적 기반을 강화함과 함께 국유재산 취득재원 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법률개정안 제10조는 국유재산의 취득재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현재법안

이러한 취지에 기초하여 입안된 규정이 정부의 법률안 제10조이다. 정부의 법률안 제1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조(국유재산 취득 재원의 확보) 국가는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의 매각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문제점 검토 및 수정제안

(1) 문제점 검토

가) 재정법적인 문제점 검토

지난 정부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특별회계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 일환으로 종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운용되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관한 법이

2005. 12. 14. 법률 제7724호로 폐지되었고 그 결과로 해당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입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국유재산처분재원은 일반회계로 편입되며 정부의 일반적 예산편성에 따라 배정된 자금으로 추가적인 국유재산취득이 가능할 뿐인 것이다.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 국가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국유재산비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국유재산의 처분을 통해 확보된 재원 중 일정 부분은 반드시 국유재산취득에 재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국유재산법 전면개정안 제10조는 그러한 취지에서 입안된 것으로 취지 자체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이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입시킨 상황에서 재정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일반회계로 편입된 수입의 경우에는 국회의 예산편성에 따라 그 재원배분이 결정되는 것인데, 국유재산처분 등에 의해 확보된 재원을 국유재산취득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국유재산특별회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현행 재정법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표현상의 문제점 검토

정부의 법률안 제10조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 . . 변상금은 국유재산의 비축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국유재산사용료 등(국유재산의 취득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어느 정도”를 국유재산의 취득재원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표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즉, 그 재원에 대해 법정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그 재원의 전부를 국유재산취득재원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표현상 명백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참고입법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은 “국유림의 매각대금은 국유림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유림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현재 정부의 국유재산법률안 제10조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결론 및 수정제안

가) 재정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결론

위에서 검토한 국유재산법안 제10조의 문제점은 이 조문의 규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만일, 제10조 조문을 “의무규정”, 즉 대상 재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취득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는 국유재산관리재원을 일반회계로 한 재정법규에 반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 규정을 단순히 대상재원에 대해 일정부분을 국유재산취득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성격의 조문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10조가 “. . . 하여야 한다”는 식의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 . . 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권고적 조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조문은 현행의 재정법규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표현상의 불명확성에 대한 결론

위에서 검토한 표현상의 불명확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자

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수정안을 제시해 본다.

〈표 16〉 국유재산법률안 제10조의 수정안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 이유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재원)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및 변상금은 국유재산의 비축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재원)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및 변상금은 국유재산의 비축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u>그 재원의 적정규모를</u>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유재산취득재원의 크기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함.

10. 제11조(사권설정의 제한)

1) 조문의 타당성

국유재산은 국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이다. 따라서 그러한 재산이 국유재산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사권설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국유재산에 사권이 설정된다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여야 할 국유재산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국유재산 설정의 취지와 위에서 언급한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금지의 취지를 반영하여 학설과 법원의 판례를 통해 분명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제한을 규정한 것이 정부의 국유재산법안 제11조 제2항이다.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 규정은 국유재산, 특히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사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사권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에 비해 그 자체의 공익성이 약하고 단순히 재산가치에 의해 간접적으로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오히려 사권설정이 필요한 경우든지, 다른 법률에 의해 예외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처럼 어떤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사권설정을 허용해 주는 것이 일반재산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것을 규정화한 것이 제11조 제2항 단서이다.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사권설정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사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후자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를 규정한 것이 제11조 제1항의 취지라고 할 것이다. 제11조 제1항은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득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임의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득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11조는 전체적으로 그 내용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므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문제점

(1) 적용단계의 상이점

현재 정부의 국유재산법안 제11조는 “사권설정의 제한”이라는 표제하에 제2항에서는 국유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권설정을 하지 못하지만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사권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제1항에서는 아직 국유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해 사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그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표제와 조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11조 제1항은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조문이고, 제2항은 이미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문제가 되는 조문이다. 즉, 단계를 달리하여 적용되는 조문이 한 개의 조문으로 혼합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문까지 법안의 “총칙”에 규정하는 것은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표현상의 문제점

제1항의 경우에는 현재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 . .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주어가 마치 “재산”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이 조문에서 대상이지 주어가 아니므로 현재의 조문표현은 문제가 있다.

제2항의 경우에도 “국유재산은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마치 국유재산이 주체가 되어 사권설정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3) 수정제안

(1) 표현의 수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은 아래 표 17에서 제시한 것처럼 조문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7> 국유재산법률안 제11조의 수정안

현 재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1조(사권설정의 제한) 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① <u>국가는</u>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표현의 명확화
② 국유재산은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u>국유재산에 대해서</u> 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표현의 명확화

(2) 조문위치의 변동

가) 제11조 제1항은 수정제안한 법률안의 제2장으로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11조 제1항은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조문이므로 표 1에서 수정제안한 법률안의 제2장으로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7)

7) 앞의 <표 1> 참조.

나) 제11조 제2항은 수정제안한 법률안의 제3장으로

제11조 제2항은 국유재산의 유지·이용·보존과 관계된 것이므로 표 1에서 수정제안한 법률안의 제3장으로 위치를 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행정재산”에 관한 조문이므로 제1절에 위치시키고,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일반재산에 관한 조문이므로 제2절로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1.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1) 조문의 취지

국유지상에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공익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민적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법률안은 제18조를 신설하였다.

2) 현재법안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비용의 이

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정제안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누구든(국가는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비용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안이유

현재 법안 표현은 “국가 외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이라고 되어 있어 국민들이 조문을 읽고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법조문을 좀 더 일반국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평이한 문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8〉 국유재산법안 제18조 수정안

제 4 장 개별규정에 대한 검토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 이유
<p>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비용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u>누구든(국가는 제외)</u>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비용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조문표현 순화</p>

12. 제22조(총괄정의 용도폐지 요구 등)

1) 문제점

정부의 법률안 제22조 제1항은 “총괄청은 관리청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총괄청은 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3항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칙적으로 관리청의 권한인 것을 총괄청이 직권으로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그 규율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법규정에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22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 등”이라고 표현하여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 수정제안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문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19〉 국유재산법안 제18조 수정안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이유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① 총괄청은 관리청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① 총괄청은 관리청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u>인계할 것</u> (이하 “용도폐지	조문표현의 명확화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이유
	<p>등”이라 함)을 요구 할 수 있다.</p>	

13.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1) 조문의 취지

정부의 국유재산법안 제30조는 현행 국유재산법 제19조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여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청의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총괄사무의 일부의 위임 또는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현행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현행 국유재산법 제19조의 위임에 근거하여 현행 국유재산법 제15조에 따른 총괄청의 감사권한 등을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조문의 타당성

현재 대법원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이러한 총괄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제25조 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조직법 제6조에 근거하여 총괄사무의 위임·위탁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⁸⁾⁹⁾ 하지만 국유재산총괄사무

8) 대법원 1995.7.11. 선고 94누4615 판결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으나, 정부조직법 제5조

의 위임·위탁에 대해 좀 더 일반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한다는 측면에서 국유재산법에서 이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국유재산법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법률처럼 총괄청의 감사권한을 조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감사권한이 총괄청의 총괄사무의 “일부”이며 그것을 관리청 중의 하나인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현재의 법이론상으로는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법이론적인 타당성과 별도로 입법정책적인 타당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입법자의 결정은 헌법적으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명백한 재량남용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적절한 재량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14. 제30조(사용허가)

1) 문제점

-
- (현행법 제6조) 제1항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그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위 처분권한을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판결,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12127.
- 9)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6, 23면 :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과 대등한 위치에 있거나 지휘계통을 달리하는 행정관청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특히 권한의 ‘위탁’이라고 하기도 한다. 권한의 위임 중에서 등기·소송에 관한 사무를 이양하는 것을 특히 ‘촉탁’이라고 하고 있다. 종래 위임청의 지휘감독하에 있지 않은 기관에 대한 위임에 있어서는 감독조직체계의 문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수임청이나 그 감독청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오늘날은 이러한 위임도 그 동의 없이 법령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7조 이하); 박균성, 행정법론(下) 제6판, 박영사, 2008, 33면 ; 홍정선, 행정법원론(下), 제16판, 박영사, 2008, 28면,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07, 874면,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6, 627면,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Ⅱ, 법문사, 2007, 27면, 석종현, 일반행정법(下), 삼영사, 2005, 32면.

제30조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라는 행정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관리청은 이 규정을 처분법규로 하여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법안을 ‘자세하게’ 검토하면 국유재산의 “관리”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청”이 어느 기관이 되며, 그러한 관리청의 권한인 국유재산의 “관리”의 범주에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가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처분의 직접적 근거법규인 제30조에서 좀 더 처분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일반국민들의 법률이용을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다. 이 규정은 특히 일반국민들과의 이해관계가 깊은 조문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참고 입법례

실제로 많은 행정법규에서 처분법규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담당 행정청을 직접 명시해 주고 있다.

〈표 20〉 처분법규의 입법례

참고 법조문 번호	내 용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으로부터</u>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법 제40조 제1항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u>관리청의</u>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수정제안

위에서 제시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30조를 아래 표에서 같이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 국유재산법안 제30조의 수정안

현 재 안	수정제안	제안이유
제30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30조(사용허가) ① <u>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u>	일반국민의 편의를 고려한 처분법규의 명확화

15. 제32조(사용료)

1) 조문의 취지

정부의 법률안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유료”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사용료가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유료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료의 부과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정부의 법률안 제32조에서는 이러한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사용허가라는 행정행위에 기초하여 사용료가 부과되지만 사용료의 본질은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대가”, 즉 민법상 임대료와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법률안에서도 사용료에 관한 조문을 기본적으로는 행정재산에 관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문은 일반

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에 있어서의 “대부료”에 준용되도록 하고 있다.

2) 현재법안

현재 정부의 법률안은 제3장 “행정재산”에 관한 조문의 일환으로 제32조에서 사용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문은 제4장 “일반재산”에 관한 장에서 제47조에 의하여 일반재산에도 준용되도록 되어 있다.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29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0조제7항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장 임대료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1.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 1천분의 25이상
2.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 1천분의 40이상
3. 경작용의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4.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5. 그 밖의 경우 : 1천분의 50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사용허가기간 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결정 후 3년 이내에만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2.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면적으로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따른다.

3) 참고 입법례

(1) 세법상 연부연납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第71條 (年賦延納) ①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相續稅納付稅額 또는 贈與稅納付稅額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納稅義務者의 申請을 받아 年賦延納을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 納稅義務者는 擔保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72條 (年賦延納加算金) 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의 許可

를 받은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規定한 金額을 各 回分의 分納稅額에 加算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分納稅額에 대하여는 年賦延納을 許可한 總稅額에 대하여 第67條 및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 또는 納稅告知書에 의한 納付期限의 다음날부터 당해 分納稅額의 納付期限까지의 日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
2. 第1號외의 경우에는 年賦延納을 許可한 總稅額에서 直前回까지 납부한 分納稅額의 合計額을 差減한 殘額에 대하여 直前回の 分納稅額 納付期限의 다음날부터 당해 分納稅額까지의 日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

상증세법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각호의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을 말한다.

(2) 지방자치법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 ·

4) 수정제안

물론 국내에서 세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요구하고 있고, 국유재산법상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양자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다. 하지만 좀 더

바람직한 형태의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료의 기준에 대해 세법처럼 법률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위의 참고 입법례를 참고 하여 다음과 같이 제32조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2〉 국유재산법안 제32조 수정안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 이유
<p>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요율(料率)</u>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p> <p>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관리청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 제5항을 준</p>	<p>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u>시장임대료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율(料率)</u>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p> <p>② <u>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은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고지서에 따른 부과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사용허가를 하면서 조건으로 사용자에 의한 자진납부를 조건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조건에 정</u></p>	<p>가. 헌법재판소와 학설이 요구하는 법치행정원리에 부합하는 입법</p> <p>나. 법률에서 규정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시정</p> <p>다. 다른 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p>

제 4 장 개별규정에 대한 검토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 이유
<p>용한다.</p> <p>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평가방법)</p> <p>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사용허가기간 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결정 후 3년 이내에만 이를 적용할 수 있다.</p> <p>1. 토지의 경우 : 『부동산가액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p> <p>2.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p>	<p><u>한 기간에 자진납부하는 것으로 한다.</u></p> <p><u>④ 제1항의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u>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u></u></p> <p><u>⑤ 관리청이 제29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0조제7항을 준용한다.</u></p> <p>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평가방법)</p> <p>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p>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 이유
<p>한다. 다만, 건물을 10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면적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따른다.</p>	<p>사용허가기간 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결정 후 3년 이내에만 이를 적용할 수 있다.</p> <p>1. <u>토지 및 주택의 경우</u>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 및 주택의 개별공시가격의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 및 주택의 개별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표준지·표준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p> <p>2. <u>제1호 이외의 재산의 경우</u>: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면적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따른다.</p>	

5) 수정제안이유

첫째, 수정 법안 제32조 제1항의 경우에는 헌법상 법치주의원리와의 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요율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법률”에서는 적어도 그 중요한 사항은 명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안의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어서 “요율”의 기

본적인 사항이라도 법률에서 규정을 해야 한다는 법치행정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헌법재판소와 학설이 요구하는 법치주의 내용을 반영한 입법이 되어야 한다.

둘째, 법 제32조 제2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 규정은 사용료 납부기간에 관한 것으로 선납원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¹⁰⁾, 국유재산법 제30조 제7항에서 이 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법률안처럼 시행령에 두더라도¹¹⁾ 법이론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납부기간”은 사용료납부의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분명하게 규정하는 바 없으므로 국유재산법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신 현재 정부의 법령안에서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용료의 부과징수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안 제32조 제3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분할납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재 법률안 제32조 제2항에서는 하나의 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너무 많아 일반국민들이 법조문을 읽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유사한 다른 입법례를 보더라도 이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법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할납부가산금의 경우에는 적어도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물론 세부적인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第16條 (代價의 先納)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財産의 賣却·貸付·用役의 제공 기타 歲入의 原因이 되는 契約에 있어서는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契約相對者로 하여금 그 代價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1) 국유재산법시행령안 제30조.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용료납부의무 자체가 민법의 일반원칙인 동시이행이 아니라 “선납”임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분할납부가산금은 저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부의 법안에서 제시한 6%를 5%로 감면할 것을 제안하였다. 참고로, 지방세 법상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선납을 하게 되면 10%를 감액하여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경우에는 2005. 1. 14. 전문 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해서도 가격공시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주택에 대해서도 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¹²⁾ 물론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토지 중의 하나로 제3호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제30조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예컨대, 국가 등에 대한 재산세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85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 중 “기업용재산”의 경우에는 세금부과가 가능할 것이며 그렇다면 위 법에 따라 공시가격이 공시되는 것이 법규정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며 그 가격이 공시된다면 당연히 국유재산인 주택의 경우에도 사용허가의 경우 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

1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②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고 할 것이다.

16. 제35조(사용허가기간)

1) 조문의 취지

정부의 법률안 제35조 제1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기부채납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¹³⁾, 제2항은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한편으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허가의 “갱신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행정재산활용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이다.

2) 사용허가기간 “갱신”과 사용허가기간 “연장”

현재 정부의 법률안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사용허가기간의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기간이 정해진 사용허가의 경우에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사용허가를 “연장”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사용허가를 “갱신”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양자의 구별은 행정법에서 이론적으로 문제되는 행정행위의 존속기간과 갱신기간의 구별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할 것이다. 허가와 같은 행정행위에 유효기간이 설정된 경우에 그 기간이 처분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처분의 갱신기간(=조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된다. 행정행위에 존속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는 재신청의 문제로 기간의 경우에는 “연

13)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이 문제되면서,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행정행위에 갱신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주요 내용은 변함이 없이 다만 기간의 “갱신”이 문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존속기간을 의미하면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행정행위의 효력은 완전히 소멸하고 국민들에게는 재신청의 문제만 남게 되고, 갱신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국민들은 행정행위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은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조건을 변경하더라도 행정행위 유효기간은 갱신해 주어야 한다. 갱신기간동안 갱신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동일하게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만, 갱신기간동안에 갱신 신청을 했음에도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¹⁴⁾

판례는 행정행위의 성질상 장기간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가된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갱신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그러한 유효기간이 여러 번 갱신되어 전체적으로 더 이상 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시점이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이제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¹⁵⁾

결론적으로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제도”보다는 사용허가기간의 “갱신제도”가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있어서 사용허가권자인 국민의 지위를 좀 더 보호해 주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입법례적으로는 “갱신제도”는 대부분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상의 전문자격증의 갱신이나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유효기간의 갱신처럼 명확하게 유효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14)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판결.

1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판결.

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행정법 이론적으로 “특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법적 지위가 통상적으로 “갱신제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허가권자 등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현행 법령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가장 유사한 경우로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갱신” 제도만이 존재한다.

3) 조문 문구의 문제점

다른 입법례 상의 용어사용과 비교를 하였을 때 사용허가기간의 “갱신”보다는 “연장”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행위의 존속기간과 갱신기간과의 구분에 대한 일반론을 고려했을 때에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권자에게는 사용허가기간을 다시 “연장”해 주는 제도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허가기간을 가능한 한 연장해 주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사용허가권자가 변호사자격증소지자나 운전면허증소지자와 같은 확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4) 수정제안

위에서의 문제점 지적을 반영하여 정부의 법률안 제35조에서 “갱신”을 “연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표 23〉 국유재산법안 제35조 수정안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 이유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	다른 입법례상 용어 사용과의 조화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 이유
<p>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p> <p>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은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만 갱신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p>	<p>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p> <p>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은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u>연장</u>할 수 있다. 다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만 <u>연장</u>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u>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u>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p>	

17. 제41조(처분 등)

1) 문제점

정부의 법률안 제41조 제1항은 “일반재산은 제9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제9조 제7항에서 규정한 “관리청등은 제3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고, 해당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관리계획은 다음 연도에만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내용이 중복된다고 할 것이다.

2) 수정제안

내용이 중복되는 제41조 제1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 제42조(관리처분사무의 위임 및 위탁)

1) 제42조 제5항의 취지

정부의 법률안 제42조는 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원래의 관리청에서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는 문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42조 제1항에서는 위임·위탁의 근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5항에서는 이러한 위임·위탁에 따라 관리처분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등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예산총계주의, 그리고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국고금직접사용금지규정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원래 법상의 관리·처분업무자가 아닌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한 경우 사무의 위임·위탁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그로 인해 발생한 수입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규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입법된 것이다.

2) 참고 입법례: 국세징수법 제61조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 국세징수법 제61조를 들 수 있다. 이 규정은 체납된 세금을 강제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매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시킨 경우에 그 공매대금으로부터 대행에 따른 비용보전 차원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4〉 참고 입법례: 국세징수법 제61조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제42조 제5항의 타당성

정부의 법안 제42조 제5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17조, 그리고 국고금 직접사용을 금지한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의 위반여부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53조에 의하여 수입대체경비 등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국고금관리법 제7조도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61조처럼 국유재산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19.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1) 문제점

제47조는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무상대부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 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2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문에서 사용된 용어 “무상대부”가 지칭하는 경우는 법안 제34조(사용료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안 제34조가 표현한 것처럼 엄밀하게 의미하면 “무상대부”가 아니라 “대부료의 면제”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대부료가 면제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부료가 부과가 되는 것이 옳지만 법률이 규정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그 대부료가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부료가 무상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대부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의미차이가 있다. 즉, 대부계약의 유상성 여부를 설명함에 있어서 전자의 경우에는 대부계약은 유상이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상성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게 되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대부계약은 일정한 경우에는 유상이고, 다른 일정한 경우에는 무상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¹⁶⁾

2) 수정제안

제47조상의 표현 중 “무상대부”는 “대부료의 면제”로 표현을 수정하

16) 이 부분이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법안에서 분명하게 표시되고 있지 않지만 일반 재산에 관한 조문에서 준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법안 제25조 제1항(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 . .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34조에서는 “사용료의 면제”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전자를 규정한 것이 법상의 표현으로 볼 때 분명해 보인다.

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0. 제60조(현물출자)

1) 조문의 취지

정부의 국유재산법안 제60조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이하 “현물출자법”이라 함)을 폐지하고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의 현물출자도 국유재산의 처분의 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현재 현물출자법상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요건이 매우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 반해 정부의 법률안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현물출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요청인 법규정의 명확화와 국민들의 법률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현물출자 요건의 비교

현재 현물출자법(『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물출자의 요건과 이 규정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된 정부의 국유재산법안 제60조상의 현물출자요건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5〉 현물출자의 요건 비교

현물출자법 제3조	국유재산법안 제60조
<p>제 3 조(현물출자) 기획재정부장관은 國有財産을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政府出資企業體에 現物出資할 수 있다.</p>	<p>제60조(현물출자)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2. 국가사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거나 민영화를 전제로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문제점 검토

첫째, 정부의 법률안에서 현행 현물출자법상의 현물출자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인데 포괄적인 보충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관계로 입법시 예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필요성이 등장하였을 때 행정청이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정부의 법률안 제60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읽게 되면 국가가 어느 기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지만 국민들의 법률이용에 있어서 편의증진을 위해 현재 현물출자법 제3조처럼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4) 수정제안

이러한 문제점 지적을 반영하여 국유재산법안 제60조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6〉 국유재산법안 제60조의 수정안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이유
<p>제60조(현물출자)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2. 국가사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거나 민영화를 전제로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제60조(현물출자)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u> 당해 <u>정부출자기업체에</u>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2. 국가사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거나 민영화를 전제로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u>기타 정부출자기업체에</u> <u>추가적인 현물출자필요성이</u> <u>있다고</u> 판단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를 받는 기관을 명확히 함 - 입법시 예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물출자필요성의 발생에 대한 대비

21. 제65조(상법의 적용배제)

현재 현물출자법 제6조는 국가가 국유재산을 정부출자기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규정 중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물출자법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상법규정은 상법 제295조 제2항, 제299조 제1항 제422조이다.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현물출자하려는 자산이 회사에 이전되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위 상법규정들은 이의 적정한 이행확보를 위해 법원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상법 제295조 제2항과 제299조 제1항은 회사설립시의 현물출자에 관한 규정이고, 제422조는 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에 관한 규정이다.

개인이 아닌 국가가 정부출자기업체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제도를 남용하여 투자자와 기업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물출자의 적정한 이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법원의 개입을 규정하고 있는 위 상법규정들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는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것을 규정한 것이 현재의 현물출자법 제6조이다. 정부의 국유재산법안 제65조는 이 규정을 승계한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타당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차이점은 정부의 국유재산법안 제65조는 현물출자법 제6조와 달리 적용배제하는 상법규정에 상법 제299조의2 규정을 추가하였다. 상법 제299조의2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상법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감정인은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물출자법 제6조가 상법 제299조 제1항의 적용을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당연히 상법 제299조의2도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현물출자법 제6조는 제29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제299조의2조는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국유재산법안 제65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타당한 조문이라고 할 것이다.

22. 제67조(타인토지 등의 출입)

1) 조문의 취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인접 타인소유·점유 토지를 조사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의 국유재산법은 이에 대한 근거조문이 없어서 현장업무에 애로가 있고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조문을 입법하고 이를 통해 민원분쟁의 사전해소를 위해 정부의 국유재산법안은 아래와 같이 제67조를 제안해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문은 한편으로는 필요하고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 토지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온한 사생활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표 27〉 정부의 국유재산법안 제67조

내 용	비 고
제67조(타인토지 등의 출입) ① 관리청등의 직원은 제66조제2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타인의 토지 등의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신설

내 용	비 고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참고 입법례

업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타인 소유 토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조문이 행정법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를 들 수 있다. 그 중 아래 표에서는 후자의 입법례를 참고로 소개하고자 한다.

〈표 28〉 참고 입법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 조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측량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인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한 때
2. 제2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
3.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
-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 ⑥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출입의 통지】

- ① 제9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 또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3) 제67조의 문제점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고 행정법의 일반이론을 기초로 하여 현재의 법안 제67조를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통지와 관련한 문제점

가) 통지시한의 불명확

토지보상법 제10조 제2항은 출입하려는 토지의 점유자에게 5일전에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유재산법안 제67조 제2항은 그 통지시한을 “사전”이라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나) 통지를 받는 자에 대한 부분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 가장 이해관계가 밀접한 자는 그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라고 할 것이다. 공무원의 토지출입은 그 점유자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참고로 소개한 토지보상법의 관련규정에서는 통지를 받는 주체를 “토지의 점유자”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국유재산법안 제67조 제2항은 “토지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표현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에게만 통지해도 되고, 관리인에게만 통지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통지의무를 규정한 원래 취지인, 점유자의 평온한 사생활보장과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의 통지에 대한 부분

정부의 법안 제67조 제2항 단서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통보제도가 법정화된 이후 실제로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려고 하는데 통보를 해야 하는 대상인 토지소유자·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가 분명치가 않으면 통보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실지조사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둔 조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여전히 법적으로 통지의무는 행정청에게

있고 다만 “통지방법”에 있어서 일반적인 통지방법이 아닌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청의 통지의무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2) 출입시한설정의 문제점: 일출전 또는 일몰후의 출입 문제

통지제도가 입법화된다고 하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함에 있어서 사전에 통지만 하면 그 토지의 점유자가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무원은 그 토지를 출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출입시점이 일출전, 일몰후인 경우에는 개인들의 사생활이 좀 더 강력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10조 제3항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국유재산법안 제67조에는 이에 관한 규율이 결여되어 있다.

(3) 제3항과 제4항의 위치이전

정부의 법안 제3항과 제4항은 논리적으로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제4항은 제1항, 제2항과 연결이 되어 합법적으로 공무원이 타인토지를 출입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그러한 합법적인 출입요건을 갖추어 공무원이 타인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는 어떠한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규정한 것이다.

(4) 벌칙조문의 결여

제67조를 정부가 제안한 취지처럼 공무원이 실제로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타인 토지를 출입하여 효율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합법적 요건을 갖추어 타인 토지를 출입하려고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점유자가 방해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토지보상법과 같은 법률은 그러한 적법한 출입요건을 갖추어 출입하려는 공무원을 제지하는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국유재산법안은 제67조에서 국민들의 의무만을 규정해 두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민에 대한 강제규정으로서의 벌칙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형법이 적용되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지만 이는 형량이 과도하므로 다른 유사입법례를 참조하여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표 29〉 참고입법례: 토지보상법 및 형법상의 벌칙규정

토지보상법상 벌칙규정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p>제9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200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 제11조(제2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 ... 	<p>제136조 【공무집행방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 수정제안

첫째, 통지시한과 관련한 문제점의 경우에는 명확한 시점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한 예로 보고서에서 제시한 토지보상법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5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통지를 받는 자가 불분명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통지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고, 보고서에서 소개한 토지보상법의 관련규정을 참고할 때 “점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인)”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통지의 대상자인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법률안 제67조 제2항 단서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게 하는 것이 다른 법 영역의 일반적인 법리와 조화가 된다.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고 할 때 구체적인 공시송달방법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 제14조가 적용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

넷째, 출입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문제점의 경우에는 유사한 입법례인 토지보상법 제10조 제3항과 동일한 내용의 조문을 제67조 제3항으로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섯째, 현재의 제3항과 제4항은 조문순서를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3항의 신설에 따라 현재의 제3항은 제5항이 되고 제4항은 그대로 제4항이 된다.

여섯째, 제67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한 벌칙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벌칙의 양은 유사한 법조문인 토지보상법 제97조를 참조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조문의 위치는 현재 정부의 법률안에 따르면 제82조 제2항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표 30〉 국유재산법안 제67조·제82조 수정안

제 4 장 개별규정에 대한 검토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이유
<p>제67조(타인토지 등의 출입) ① 관리청등의 직원은 제66조 제2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타인의 토지 등의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67조(타인토지 등의 출입) ① 관리청등의 직원은 제66조 제2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토지의 <u>점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출입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 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u></p> <p>③ <u>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u></p> <p>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⑤ 타인의 토지 등의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p>	<p>가. 사전통지대상자의 명확화</p> <p>나. 사전통지일자의 명확화</p> <p>다. 일출전, 일몰후 출입의 억제</p> <p>다. 논리성·체계성을 고려한 조문항의 위치변경</p>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이유
제82조(벌칙)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벌칙) ①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7조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청등 직원의 적법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신설: 실지조사의 실효성 확보.

23.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1) 조문의 취지

사용료, 대부료, 가산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정부의 법률안 제73조는 이러한 납부의무의 연체에 대해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 현재법안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시행령 제73조(연체료의 징수) ① 관리청등은 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고지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참고 입법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관련 규정

국세징수법은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의한 세금납부를 납부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부과를 통해 강제를 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제도는 국유재산법상 연체료부과규정과 그 취지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규정은 아래와 같다.

〈표 31〉 참고 입법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관련 규정

第21條 (가산금) 國稅를 納付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이 지난 날로부터 滯納된 國稅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다만, 國家와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2條 (증가산금) ①滯納된 國稅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納付期限이 지난 날로부터 每 1月이 지날 때마다 滯納된 國稅의 1千分の 12에 상당하는 加算金(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第21條에 規定하는 加算金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이 경우 重加算金을 加算하여 徵收하는 기간은 60月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滯納된 國稅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第21條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④外國의 權限있는 當局과 相互合意節次가 進行중이라는 이유로 滯納額의 徵收를 猶豫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國際租稅調整에 관한法律 第2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에 대한 特例를 적용한다.

4) 문제점 검토

(1) 연체료부과대상의 불명확

국세징수법 제21조는 가산금을 계산하는 대상금액과 관련하여 “滯納된 國稅에 대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유재산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이에 대한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체료를 계산하더라도 그 연체료를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2) 연체료의 산정기준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한 점

정부의 국유재산법안 제73조 제1항은 연체료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판시하는 법치행정원리의 내용으로서의 포괄 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연체료의 산정기준은 국민들의 기본권보장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므로 그 대강은 법률에서 명시가 되어 져야 한다. 현재 정부의 법안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5) 수정제안

첫째, 연체료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원래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료가 계산된다는 것을 법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체료 산정기준이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략적인 기준을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연체료산정기준이 급박하게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질의 것이라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 보다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연체료 산정기준이 급박하게 산정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입법례로 제시한 국세징수법상 조문의 경우에도 가산금의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표 32〉 국유재산법안 제73조 수정안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 이유
법 제73조(연체료등의 징수) ① 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제73조(연체료의 징수) ① 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이 납부기한 내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여 법률에 규정할 사항과 시행령에 규정할 사항을 재조정함.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 이유
<p>다)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시행령 제73조(연체료의 징수) ① 관리청등은 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p>	<p>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u>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u> 다만,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p>② 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u>시행령 제73조(연체료의 징수) ① 관리청등은 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u></p>	

제 4 장 개별규정에 대한 검토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 이유
<p>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p> <p>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p> <p>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p> <p>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p> <p>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고지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p>	<p><u>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고지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p>	

24. 제75조(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1) 조문의 취지

국유재산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원금과 함께 일정한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과오납부한 사용료 등은 원금과 함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가로 국가가 반환해 주어야 한다. 이것을 규정한 것이 정부의 법률

안 제75조에 있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이다.

2) 현재법안

법 제75조(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시행령 제7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3) 참고입법례: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환급가산금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의 환급가산금이나 국유재산사용료의 반환가산금이나 그 본질은 모두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법률상 정당한 이유없이 일정기간 과다보유한 금원을 반환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표 33〉 참고입법례: 국세기본법 제52조

법 第52條 (국세환급가산금) 稅務署長은 國稅還給金을 제51조에 의하여 총당 또는 支給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총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期間과 金融機關의 預金利率등을 參酌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率에 따라 計算한 金額(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國稅還給金에 加算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시행규칙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4) 문제점 지적

첫째,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의 가산금은 국세의 환급가산금과 다를 이유가 없을 것이다.

둘째,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안에서는 국유재산법상 사용료분납에 따른 가산금과 과오납금환급 가산금을 동일하게 6%로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는 그 성질이 다르다. 전자는 법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아직 가산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법률에 의하여 “선납”을 규정하고 있는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고, 후자는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을 납부한 결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참고로 사용료는 민법상 임차료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법은 임차료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제633조에서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수정제안

국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이나 국유재산법상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가산금이나 그 본질은 행정청이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보유하고 있었던 금원을 반환하면서 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렇다면 굳이 국유재산법에서 별도의 반환가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이미 제도가 정비되어져 있는 국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제도를 준용하는 형태로 입법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유재산업무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별도의 반환가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국세청이 매년 이자율을 반영하여 고시해 둔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초로 하여 반환가산금을 계산하면 된다.

〈표 34〉 국유재산법안 제75조 수정안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 이유
<p>법 제75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p> <p>시행령 제7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p>	<p>법 제75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u>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u></p> <p><u>시행령 제7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삭제</u></p>	<p>가. 과오납금반환가산금의 경우에는 성질이 유사한 국세기본법상의 제도를 준용</p> <p>나. 현재 법안에서 준용하고 있는 분납가산금과 과오납금반환가산금은 성질이 다른 제도임.</p>

25. 제76조(정보공개)

1) 조문의 취지

국유재산법상 정보공개원칙을 명시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려고 한다.

2) 현재 법안

제76조(정보공개)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문제점 지적

이 법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다. 총괄청은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

이 법규정은 내용상 불필요한 규정임에도 굳이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예컨대, 이 법규정에서는 총괄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청과 같은 다른 기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법규정은 “총괄청은 . . .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 방법 중 전자매체를 통한 공개 이외에 교부, 열람 등에 의한 공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4) 수정제안

국유재산법안 제76조는 전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규정은 본질적으로 불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입법을 하게 되면 법규정 문구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26. 부칙 제7조(국유재산관리조직개편준비단의 설치)

법안 제76조와 같은 규정을 굳이 둔다면 그 취지는 주로 국유재산 담당기관들의 정보공개 의지를 선언적 규정을 통해 분명하게 표명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76조를 입법한다면 아래 표의 제2안과 같은 형태로 입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5〉 국유재산법안 제76조 수정안

현 재 안	수정제안	수정제안 이유
제76조(정보공개)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안: 전면삭제 제2안: 제76조(정보공개) 국유재산의 총괄청·관리청 등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안: 법적용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함 제2안: 국유재산관리기관의 정보공개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선언적으로 규정.

26. 부칙 제7조(국유재산관리조직개편준비단의 설치)

1) 규정의 취지

정부가 국유재산법을 30년만에 전면개정하게 되면 국유재산법을 집행하는 행정조직도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 그리하여 정부의 법률안 제7조는 국유재산의 행정조직을 개정된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편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조직개편준비단”을 기획재정부에 설치할 것을 부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조문의 타당성

국유재산관리조직개편준비단은 전면적인 국유재산법의 개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지는 행정조직상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법이론적으로도 이 규정은 행정조직법정주의라는 대 원칙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조직법정주의가 실제로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면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학자들은 이 부분을 많이 비판을 하고 있으므로 행정조직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국유재산법은 1976년에 전면개정된 후 그 체제를 30년 이상 사용하여 왔다. 전면개정의 필요성 자체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그 전면개정의 방향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정도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정부의 국유재산법 전면개정안은 기본적으로 현행 국유재산법의 큰 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수정이 필요한 조문을 수정하고 몇몇 조문을 추가하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비록 내용적으로는 현행 법률의 근간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조문의 배치와 같은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에 어울리도록 미래를 바라보고 좀 더 체계적인 법체제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체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정부의 국유재산법 전면개정안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각 조문별로 논리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 적절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였다. 이 보고서가 새로운 세기에 행해지는 새로운 국유재산법의 출범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강현호, 행정법총론, 박영사, 2007
-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II, 법문사, 2007
-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8
- 김동희, 행정법 II, 박영사, 2006
-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08
-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6
-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5
- 박균성, 행정법론(下), 박영사, 2008
- 석중현, 일반행정법(上)(下), 삼영사, 2005
- 이광윤,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6
-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07
- 홍정선, 행정법원론(上)(下), 박영사, 2008
- 류지태, “현행 국유재산관리의 법적문제”, 『고려법학』 제36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1
- 박헌주 외, “공공부문 보유부동산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999

▶▶▶ 판례색인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판결.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12127판결.

참 고 문 헌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판결.

별첨자료

별첨자료 1: 2008. 7. 정부의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유재산법(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에 따라 국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국유재산의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국유재산의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5. “관리청”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6. “관리청등”이란 제5호의 관리청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7. “용도폐지(用途廢止)”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리전환(管理轉換)”이란 각 관리청 간이나 서로 다른 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이관(移管)하는 것을 말한다.

9. “정부출자기업체”란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10.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기간 동안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기간 동안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변상금”이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취득과 처분은 균형을 이룰 것
2.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 5 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기업예산회계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삭 제>

<삭 제>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제 6 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삭 제>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 7 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

제 8 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일반재산을 관리·처분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일반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관리·처분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에 속하는 재산

2. 관리전환·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3.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4. 공항·항만 또는 공업단지내의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5.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청이 그 관리청에게 관리·처분하도록 지정한 재산

제 9 조(국유재산관리계획)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6월 30일까지 관리청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이나 사업의 예정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관리청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④ 제3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2.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적인 사항

3.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관리·처분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명세

5. 그 밖에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관리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관리청등은 제3항의 기한 내에 국유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해당 관리계획을 집행할 수 있다.

⑦ 관리청등은 제3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고, 해당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관리계획은 다음 연도에만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⑧ 관리청은 매년의 관리계획 집행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재원)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및 변상금은 국유재산의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사권설정의 제한) 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유재산은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①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②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따른 소관청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간은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4조(등기·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명의개서,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등기, 등록이나 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의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國)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명의를 그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증권의 보관·취급) ① 총괄청이나 관리청등은 증권을 한국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관·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취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와 수급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괄청과 감사원에 제출하되,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취급 또는 수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과 「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6조(관리전환의 협의 등) ① 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을 받거나 소관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에게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관리청을 결정한다.

1. 대상재산의 관리 상황 및 활용 계획
2. 국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우선 순위

제17조(서로 다른 회계·기금 간의 유상관리전환 등) 서로 다른 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無償)으로 할 수 있다.

1.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청 간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가. 관리전환하려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이 해당 재산의 가액(價額)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나. 상호교환의 형식으로 관리전환하는 경우로서 유상으로 관리전환하는 데에 드는 예산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비용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부처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나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 2 장 총괄청

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① 총괄청은 관리청등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소관 행정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1월 말일까지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관리청등의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監査)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① 총괄청은 관리청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관리청에 통보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총괄청은 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총괄청은 관리청이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청의 지정) 총괄청은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관리청을 지정한다.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회) ①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총괄청의 관리전환 결정 및 직권 용도폐지 시행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정부가 소유한 지분증권의 매각가격 산정 및 감액율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80조에 따른 청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 3 장 행정재산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교환 또는 양여할 수 있다.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의 교환에 관한 교환목적·가격 등의 확인사항, 제1항제2호의 양여에서 제55조제3항의 준용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재산관리

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리청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무의 위임은 관리청이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관리위탁) ① 관리청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은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삭 제>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사용권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31조(사용허가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관리청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3조(사용료의 조정) ① 관리청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나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4조(사용료의 면제)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삭 제>

②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은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관리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해당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3. 거짓의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의 제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관리청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② 관리청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7조(청문) 관리청은 제3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원상회복)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미리 원래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39조(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제40조(용도폐지) ①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 4 장 일반재산

제 1 절 통 칙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제9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처분한다.

② 관리청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과도한 경우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관리청등이 인정하는 경우

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 및 위탁) <삭 제>

<삭 제>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공무원, 관리청 또는 그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다.

③ 제8조제3항 및 제1항에 따라 관리청 및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한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가 해당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임이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받아 관리·처분한 일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5조(개척·매립·간척·조림을 위한 예약) ① 일반재산은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약 상대방은 그 사업기간 중 예약된 재산 또는 사업의 기성부분(既成部分)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가 이미 완성한 때에는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만 그 기성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약 상대방에게 대부·매각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⑤ 관리청등이 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의 매각이나 양여를 예약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 절 대 부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10년
2. 제1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3. 그 밖의 재산: 1년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隨意)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관리청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무상대부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2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제 3 절 매 각

제48조(매각)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특별회계나 기금 소관 재산으로 그 회계나 기금의 운용상 매각이 필요한 경우

4. 재산의 위치·규모·형태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소유권의 이전 등) 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매각계약의 해제)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2. 매수자가 거짓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그 밖에 부정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3.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안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제53조(시설물의 매수)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관리청이 매수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제44조의 방법으로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알린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 4 절 교 환

제54조(교환) ①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잡종재산의 가치 및 이용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당해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代納)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5 절 양 여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1.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게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고 관리가 곤란하여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를 받은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관리청등은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6조(일괄양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일괄하여 양여한 경우에는 총괄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6 절 개 발

제57조(개발) 일반재산은 제58조와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한 후 임대·분양할 수 있다.

1. 주변 환경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2. 재정 수입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3.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4. 그 밖에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제58조(신탁 개발) ①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일반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관리청이 일반재산을 제1항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탁계약을 갱신 하고자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가 일반재산을 제1항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괄청과 협의”는 “총괄청의 승인”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과 신탁업자의 신탁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위탁 개발) ①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통하여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이 일반재산을 제1항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가 총괄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제1항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괄청과 협의”는 “총괄청의 승인”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임대·분양·관리방법은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청등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 수탁자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절 현물출자

제60조(현물출자)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1.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2. 국가사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거나 민영화를 전제로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1조(현물출자 절차) ① 정부출자기업체는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필요성
2. 출자재산의 규모와 내역
3. 출자재산의 가격평가서
4. 재무제표 및 경영현황
5. 사업계획서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출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물출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현물출자의견서를 붙여 총괄청에 현물출자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제62조(출자가액 산정) 일반재산의 출자가액은 제44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에 따른다.

제63조(출자재산 등의 수정) ① 관리청은 현물출자 대상재산이 평가 기준일로부터 출자일까지의 기간에 멸실·훼손, 그 밖의 가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라 출자일에 출자재산이나 출자가액을 수정하여 출자할 수 있다.

제64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정부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 이하로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취득할 수 있다.

제65조(상법의 적용제외) 정부출자기업체가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상법」 제295조제2항, 제299조제1항, 제299조의2와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대장(臺帳)과 보고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관리청이나 재산관리관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등기부등본과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이나 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대장과 제2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총괄청은 관리청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總括簿)를 갖추어 두어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총괄청·관리청 또는 제28조, 제29조, 제42조제1항·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7조(타인토지 등의 출입) ① 관리청등의 직원은 제66조제2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

다)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타인의 토지 등의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8조(가격평가 등)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국유재산관리운영보고서) ① 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관리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관리운영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총괄청은 제1항의 국유재산관리운영보고서를 통합하여 국유재산관리운영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의 국유재산관리운영총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총괄청은 제3항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국유재산관리운영총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멸실 등의 보고) 관리청이나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적용제외)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과 그 밖에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산은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보 칙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관리청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나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등본이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삭 제>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관리청(일반재산의 경우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등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2.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5조(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76조(정보공개)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7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①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가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善意)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 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자진 반환
2. 재판상의 화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

제79조(변상책임) ① 제28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청산절차의 특례) 국가가 지분증권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권한과 소집·결의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조(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 절차) ① 제80조에 따른 회사 중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과 제8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해산등기
2. 청산인의 신고 및 등기
3. 「상법」 제533조에 따른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제출
4. 청산종결의 등기

② 제1항에 따라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민법」 제245조에 따라 그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전될 우려가 있으면 청산절차의 종결 전에도 총괄청이 그 부동산을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청산 종결 후 남은 재산의 분배에서 주주나 그 밖의 지분권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사를 청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청산절차종결에 의한 남은 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등기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제 7 장 벌 칙

제82조(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의 시행에 따른다.

제 2 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 한다.

제 3 조(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852호 국유재산법 중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경우(법률 제8852호 국유재산법 중 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 4 조(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단서와 제4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분부터 적용한다.

제 5 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변상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무단점유기간에 따른 변상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 6 조(연체료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부기한 경과하여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제 7 조(국유재산관리조직개편준비단의 설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한 조직정비를 위하여 이 법 시행 후 즉시 국유재산관리조직개편준비단(이하 “준비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준비단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관리청등은 준비단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단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준비단의 구성, 운영 및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⑤ 정부는 준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준비단의 활동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유인 보존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재산 중 보존용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국유인 잡종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관리환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수익허가를 인용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첨자료 2: 표 1에 따른 국유재산법 전면수정안

국유재산법(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에 따라 국유로 된 제5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국유재산의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국유재산의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 “총괄청”이라 함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총괄하며, 관리청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관리청”이라 함은 총괄청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6. “관리청등”이란 제5호의 관리청과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7. “용도폐지(用途廢止)”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리전환(管理轉換)”이란 각 관리청 간이나 서로 다른 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9. “정부출자기업체”란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10. (삭제 또는)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의 관리청이 소관 행정재산을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원래의 사용자가 아닌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용·수익(이하 이 법에서 “사용”이라 함)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삭제 또는)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의 관리청이 소관 일반재산을 국가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변상금”이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65조(상법의 적용제외) 정부출자기업체가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상법」 제295조제2항, 제299조제1항, 제299조의2와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국가가 지분증권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주총회나 사

원총회의 권한과 소집·결의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적용제외)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과 그 밖에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산은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 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취득과 처분은 균형을 이룰 것
2.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4. 국유재산의 처분은 국고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할 것.

제 6 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기업예산회계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제 7 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과 그 밖에 국가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 8 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부처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나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9 조(가격평가 등)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국유재산의 취득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재원)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및 변상금은 국유재산의 비축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재원의 적정규모를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사권설정의 제한) 국가는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

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①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②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따른 소관청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간은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4조(등기·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명의개서,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등기, 등록이나 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의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로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명의를 그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증권의 보관·취급) ① 총괄청이나 관리청등은 증권을 한국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관·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한국은행등은 증권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와 수급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괄청과 감사원에 제출하되,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 ④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⑤ 한국은행등은 증권에 관한 보관·취급 또는 수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과 「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 3 장 국유재산의 유지 · 운용 · 보존

제 1 절 행정재산의 경우

제16조(시효취득의 금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누구든(국가는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행정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비용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권설정금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19조(사용허가) ①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 · 공공용 · 기업용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은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사용권의 상속

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사용허가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시장임대료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은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고지서에 따른 부과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사용허가를 하면서 조건으로 사용자에 의한 자진납부를 조건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조건에 정한 기간에 자진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제1항의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관리청이 제29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22조(사용료의 조정) ① 관리청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나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사용료의 면제)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 ②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

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면제)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②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은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관리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해당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경우
3. 거짓의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의 제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관리청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 ② 관리청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④ 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7조(청문) 관리청은 제3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원상회복)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미리 원래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 2 절 일반재산의 경우

제29조(제한적 사권설정허용)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사권설정을 할 수 있다.

- 제30조(개척·매립·간척·조립을 위한 예약) ① **일반재산**은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를 예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약 상대방은 그 사업기간 중 예약된 재산 또는 사업의 기성부분(既成部分)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가 이미 완성한 때에는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기성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약 상대방에게 대부·매각 또는 양여할 수 있다.
- ⑤ **관리청등**이 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의 매각이나 양여를 예약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10년
2. 제1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3. 그 밖의 재산: 1년

-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隨意)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관리청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 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2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제33조(개발) 일반재산은 제58조와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한 후 임대·분양할 수 있다.

1. 주변 환경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2. 재정 수입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3.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4. 그 밖에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제34조(신탁개발) ① 총괄청이나 관리청등은 일반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이 일반재산을 제1항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탁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가 일반재산을 제1항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괄청과 협의”는 “총괄청의 승인”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과 신탁업자의 신탁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위탁 개발) ①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통하여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이 일반재산을 제1항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가 총괄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제1항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괄청과 협의”는 “총괄청의 승인”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임대·분양·관리방법은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청등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 수탁자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현물출자)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1.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2. 국가사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거나 민영화를 전제로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7조(현물출자 절차) ① 정부출자기업체는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필요성
2. 출자재산의 규모와 내역
3. 출자재산의 가격평가서
4. 재무제표 및 경영현황
5. 사업계획서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출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물출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현물출자의견서를 붙여 총괄청에 현물출자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제38조(출자가액 산정) 일반재산의 출자가액은 제44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에 따른다.

제39조(출자재산 등의 수정)

제40조(출자재산 등의 수정) ① 관리청은 현물출자 대상재산이 평가기준일로부터 출자일까지의 기간에 멸실·훼손, 그 밖의 가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라 출자일에 출자재산이나 출자가액을 수정하여 출자할 수 있다.

제41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정부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 이하로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취득할 수 있다.

제42조(준용규정)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대한 제17조규정은 일반 재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 처분

제 1 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처분

제43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① 총괄청은 관리청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이하 “용도폐지등”이라 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관리청에 통보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총괄청은 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다.

제44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교환 또는 양여할 수 있다.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의 교환에 관한 교환목적·가격 등의 확인사항, 제1항제2호의 양여에서 제55조제3항의 준용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

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용도폐지) ①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총괄청은 관리청이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 2 절 일반재산의 처분

제47조(처분 등) 관리청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인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과도한 경우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관리청등이 인정하는 경우

제48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9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50조(개척·매립·간척·조립을 위한 예약) 일반재산은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0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매각)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특별회계나 기금 소관 재산으로 그 회계나 기금의 운용상 매각이 필요한 경우
4. 재산의 위치·규모·형태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제52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53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소유권의 이전 등) 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 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5조(매각계약의 해제)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2. 매수자가 거짓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3.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안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제56조(시설물의 매수)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관리청이 매수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제44조의 방법으로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알린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57조(교환) ①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잡종재산의 가치 및 이용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당해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代納)하여야 한다.
- ④ 관리청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1.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게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고 관리가 곤란하여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를 받은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관리청등은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9조(일괄양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일괄하여 양여한 경우에는 총괄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5 장 각종 제재방법

제60조(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1조(변상금의 징수) ① 관리청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나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등본이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62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② 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3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4조(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65조(변상책임) ① 제28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벌칙) ①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7조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청등 직원의 적법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6 장 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 행정

제 1 절 행정청(총괄청 · 관리청)

제67조(총괄청 · 관리청)① 국유재산의 총괄청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청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③ 일반재산의 관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의 관리청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에 속하는 재산
2. 관리전환 ·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3.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4. 공항 · 항만 또는 공업단지내의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5.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청이 그 관리청에게
관리·처분하도록 지정한 재산

④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총괄
청이 그 재산의 관리청을 지정한다.

제68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
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
탁할 수 있다.

제69조(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위탁)

① 행정재산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의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청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
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관리청의 승인
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
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관리위탁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공무원, 관리청 또는 그 소속공무

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 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다.

③ 제8조제3항 및 제1항에 따라 관리청 및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한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가 해당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임이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받아 관리·처분한 일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71조(관리전환의 협의 등) ① 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을 받거나 소관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에게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관리청을 결정한다.

1. 대상재산의 관리 상황 및 활용 계획
2. 국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우선 순위

제72조(서로 다른 회계·기금 간의 유상관리전환 등) 서로 다른 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無償)으로 할 수 있다.

1.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청 간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가. 관리전환하려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이 해당 재산의 가액(價額)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나. 상호교환의 형식으로 관리전환하는 경우로서 유상으로 관리전환하는 데에 드는 예산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73조(총괄청의 관리전환요구 등) 총괄청은 관리청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을 요구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제74조(국유재산정책심의회) ①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총괄청의 관리전환 결정 및 직권 용도폐지 시행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정부가 소유한 지분증권의 매각가격 산정 및 감액을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80조에 따른 청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 절 행정계획

제75조(국유재산관리계획)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6월 30일까지 관리청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이나 사업의 예정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관리청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④ 제3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2.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적인 사항
3.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관리·처분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명세
5. 그 밖에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관리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관리청등은 제3항의 기한 내에 국유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해당 관리계획을 집행할 수 있다.

⑦ 관리청등은 제3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고, 해당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관리계획은 다음 연도에만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⑧ 관리청은 매년의 관리계획 집행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감사·대장·보고

제76조(총괄청의 감사 등) ① 총괄청은 관리청등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소관 행정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1월 말일까지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관리청등의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監査)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7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관리청이나 재산관리관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등기부등본과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이나 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대장과 제2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총괄청은 관리청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總括簿)를 갖추어 두어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총괄청·관리청 또는 제28조, 제29조, 제42조제1항·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애에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78조(타인토지 등의 출입) ① 관리청등의 직원은 제66조제2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토지의 점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출입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 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타인의 토지 등의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제79조(국유재산관리운동보고서) ① 관리청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관리운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관리운동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총괄청은 제1항의 국유재산관리운동보고서를 통합하여 국유재산관리운동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의 국유재산관리운동총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총괄청은 제3항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국유재산관리운동총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멸실 등의 보고) 관리청이나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

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절 직원의 행위제한

제81조(직원의 행위 제한)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 7 장 보 직

제82조(정보공개) (삭제 또는) 국유재산의 총괄청·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3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①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가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4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善意)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 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자진 반환
2. 재판상의 화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

제85조(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 절차) ① 제80조에 따른 회사 중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과 제8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해산등기
2. 청산인의 신고 및 등기
3. 「상법」 제533조에 따른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제출
4. 청산종결의 등기

② 제1항에 따라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민법」 제245조에 따라 그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전될 우려가 있으면 청산절차의 종결 전에도 총괄청이 그 부동산을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청산 종결 후 남은 재산의 분배에서 주주나 그 밖의 지분권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사를 청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청산절차종결에 의한 남은 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

우의 등기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의 시행에 따른다.

제 2 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 3 조(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852호 국유재산법 중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경우(법률 제8852호 국유재산법 중 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 4 조(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단서와 제4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분부터 적용한다.

제 5 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변상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무단점유기간에 따른 변상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 6 조(연체료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부기한 경과하여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제 7 조(국유재산관리조직개편준비단의 설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한 조직정비를 위하여 이 법 시행 후 즉시 국유재산관리조직개편준비단(이하 “준비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준비단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관리청등은 준비단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단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준비단의 구성, 운영 및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⑤ 정부는 준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준비단의 활동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유인보존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재산 중 보존용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국유인 잡종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관리환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수익허가를 인용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